

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봅니다

시민호민관



발간사

안녕하세요... 제5대 시민호민관 백종은입니다.



시흥시는 도·농복합도시로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 허브와 오이도 해양단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시 면적의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곧신도시 조성, 목감·은계·장현 공공주택지구 개발, 거모·하중지구 개발사업 추진, 시화 MTV 조성 등으로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지방자치법」이 특별시·광역시와 함께 자치구를 둘 수 있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인구 50만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흥시는 빠른 도시 성장으로 대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행정문제들의 발생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시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해주는 고충민원의 해결사가 되기 위해 시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억울함을 듣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시각으

로 숙고하여 공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열린 장으로 나와 서로 이해하고 상생의 해결방안을 찾도록 호민관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이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구제를 호소할 때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시흥시는 옴부즈만 제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 공행정과 독립성 유지와 시민의 시각에서 행정행위를 검토하기 위해 상근 독립제 호민관을 민간인 신분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시장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시정권고에 이르기 전에 호민회의 또는 부서협의를 통하여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호민관의 조정·중재 또는 의견표명·시정권고가 받아들여지는 수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감사 때문에 호민관의 의견표명이나 시정권고를 주저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감사면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조례에 명시하여,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시흥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옴부즈만 모범사례로 손꼽혀 타 지자체의 지방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및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시민호민관 제도를 통하여 시민들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권익구제, 더 나아가 인권을 회복하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하며,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시민호민관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표합니다.

2022. 2. 시흥시 시민호민관

백 종 은

PART
01

시민호민관 제도 소개

1. 시민호민관 도입 배경	08
2. 시민호민관 소개	10
3. 시민호민관 기능	11
4. 옴부즈만 제도 소개	12

PART
02

시민호민관 운영

1. 고충민원 처리 절차	16
2. 현장조사	17
3. 호민회의 운영	18
4. 시민자문단 구성 및 운영	19
5.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	22
6.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대외활동	23

PART
03

시민호민관 운영성과

1. 총괄(2013년 ~ 2021년)	28
2. 2021년 고충민원 처리현황	29
3. 호민회의 운영현황	30

PART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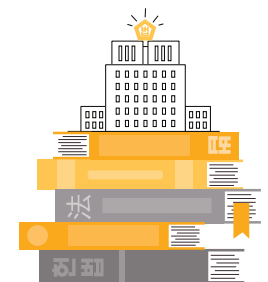
시민호민관 주요사례

1. 고충민원 결정례	37
① 경제분야	40
② 복지·문화분야	44
③ 환경분야	54
④ 도시·교통분야	66
⑤ 농정분야	86

PART
05

부 록

1. 보도자료	90
2. 연혁	96
3. 역대 시민호민관 약력	98
4.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100
5.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07





시민호민관 제도 소개

1. 시민호민관 도입 배경	08
2. 시민호민관 소개	10
3. 시민호민관 기능	11
4. 옴부즈만 제도 소개	12

01 시민호민관 제도 소개

1. 시민호민관 도입 배경

가. 시민의 대변자 『호민관(護民官)』



시민호민관

“고대 로마시대 평민의회에서 선출된 호민관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나.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이 법에 따라 잘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관료의 직권남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감찰하는 제도입니다.
- 옴부즈만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며, 언론을 통해 공표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다. 시흥시 시민호민관 제도

“시흥시는 그 어떤 곳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 수도권 서부 중심도시로써 급격한 외형적 성장과 함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시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과 불만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3년 3월 시민호민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봅니다.”

- 옴부즈만(Ombudsman)이라는 용어 대신 「시민호민관」을 선택한 이유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바라볼 때 비로소 시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의 소산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라. 시흥시 현황

- 시흥시는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 산업 도시로 국가산업단지인 시흥 스마트허브와 오이도 해양단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시 면적의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교육·의료, 복합 자족도시인 배곧신도시 조성, 목감·은계·장현 공공주택지구 개발, 거모·하중지구 개발사업 추진, 시화 MTV 조성 등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양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는 19개동 행정구역과 인구수 56만여 명이며, 2020년 주민등록기준 인구50만명이 넘으면서 전국 17번째, 경기도에서는 11번째로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주민 평균연령은 33.1세(경기도 평균 35.3세)로 드넓은 면적에 어떤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젊은 청년도시입니다.
- 영동, 제2·제3 경인고속도로 등 6개 고속도로와 2018년 6월 개통한 소사-원시선을 비롯하여 대규모 택지개발, 해양레저와 관광, 4차 산업혁명의 성장동력이 되는 산·학·연 첨단시설을 구축해 K-골든코스트 조성 등 성장하는 시흥에 부합하는 대중교통 혁신 및 순차적으로 개통하는 수인복선전철,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인천2호선 연장 등 수도권 전철이 교차하는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 요충지로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발판으로 서부 수도권 중심도시이자 서해안 개발축의 거점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시흥시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공사 등이 한창 진행 중이며, 원도심과 신도심 간 정서적·환경적 격차 등으로 고층·복합민원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오이도 빨간등대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해양생태과학관

2. 시민호민관 소개

가. 백종은 시민호민관



- 생년월일(연령) : 1959. 4. 21. (만63세)
- 주요경력
 - 중앙대학교 졸업 (경영학과)
 - 구로구 주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구로구 안전건설국장 (지방서기관)
 - 구로구 감사실장(개방형사무관)
 - 現)시흥시 제5대 시민호민관

- 신 분 : 위촉직(민간인)
- 임 기 : 4년 (2021. 6. 14 ~ 2025. 6. 13.) * 연임 불가
* 2019.8.12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임기 4년으로 변경됨
- 근무형태 : 상근 독임제
※ 개방형 직위 임용 4호 임기제 공무원 대우

나. 사무기구

- 업무범위 : 호민관 사무운영 및 고충민원 조사·처리 업무 보좌
- 인력구성

구 분	공무원				비고
	계	팀장	전문조사관 변호사	주무관	
인 원	3	1	1	1	

다. 시민호민관 사무실 (시흥시청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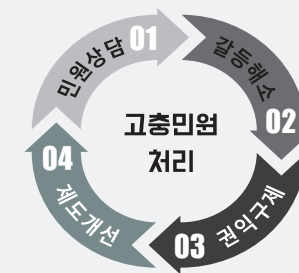
3. 시민호민관 기능

가. 설치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기능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 처리



민원의 종결자(終結者) 역할 수행

- 01 민원상담 : 적절한 민원처리 절차 등의 안내 및 상담
- 02 갈등해소 : 상호 협의를 유도함으로써 시와 시민 간 갈등 해소
- 03 권익구제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부작위·불합리한 제도 등에 의한 시민 권익침해 민원 신속 처리
- 04 제도개선 :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다. 직 무

- 시민이 제출한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 권익침해 사안의 채택·조사
-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 부패 및 불공정 유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 공표
- 호민관이 처리한 고충민원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반복적이고 고질적 민원 및 집단민원 조정·중재
- 자문단 운영 및 정책사항 총괄
- 민원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 시민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정책수립·시행
- 부패방지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 권익구제 활동 관련 국제협력 및 개인·법인,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 권익구제 활동과 관련된 자문·교육·평가
- 기업애로 해소 위한 기업고충민원 조사·처리

라. 일반민원 vs 고충민원

구분	일반민원	고충민원
법적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조
범위	-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록·등재, 확인·증명 -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 -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 -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	- 행정기관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 불합리한 행정제도 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4. 옴부즈만 제도 소개

가. 옴부즈만의 개념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로 시민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나.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행정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재량의 영역이 복잡·다양화되고, 그에 대한 민원 영역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옴부즈만이 민원인 당사자 또는 행정처리 담당자가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고 행정의 수용성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 옴부즈만의 기능, 특징과 효용성

• 옴부즈만의 기능

–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

옴부즈만은 주민의 신청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부당 여부를 검토하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하게 되므로 시민의 눈으로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

– 갈등조정 기능

옴부즈만은 행정기관과 주민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사법적 구제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에 대하여도 비용의 부담 없이 조사 및 조정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갈등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기능

– 행정개혁 기능

행정업무는 선례를 존중하는 속성이 있어, 시대의 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한 경우에도 관행이 변화되기 어려우나, 옴부즈만 활동을 통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관행이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

• 옴부즈만의 특징

– 옴부즈만은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진다.

– 옴부즈만은 행정,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 선임되므로, 그 처리 결과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

–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구제절차보다 간소하며, 민원인 입장에서 저비용의 해결 수단으로서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 옴부즈만의 효용성

– 옴부즈만은 행정업무에 대한 조예가 깊은 전문가가 시민의 시각에서 행정행위를 검토하여 위법·부당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옴부즈만이 내린 판단에 대하여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해당 행정기관의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옴부즈만 제도는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부당한 문제제기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 옴부즈만의 처리 권한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그치지만, 그 판단결과가 민원인과 해당 기관에게 통보될 뿐만 아니라 연간 운영상황의 형태로 의회 및 시장에게 보고되므로, 행정기관에서는 처음 처리 단계부터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 신중한 업무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민원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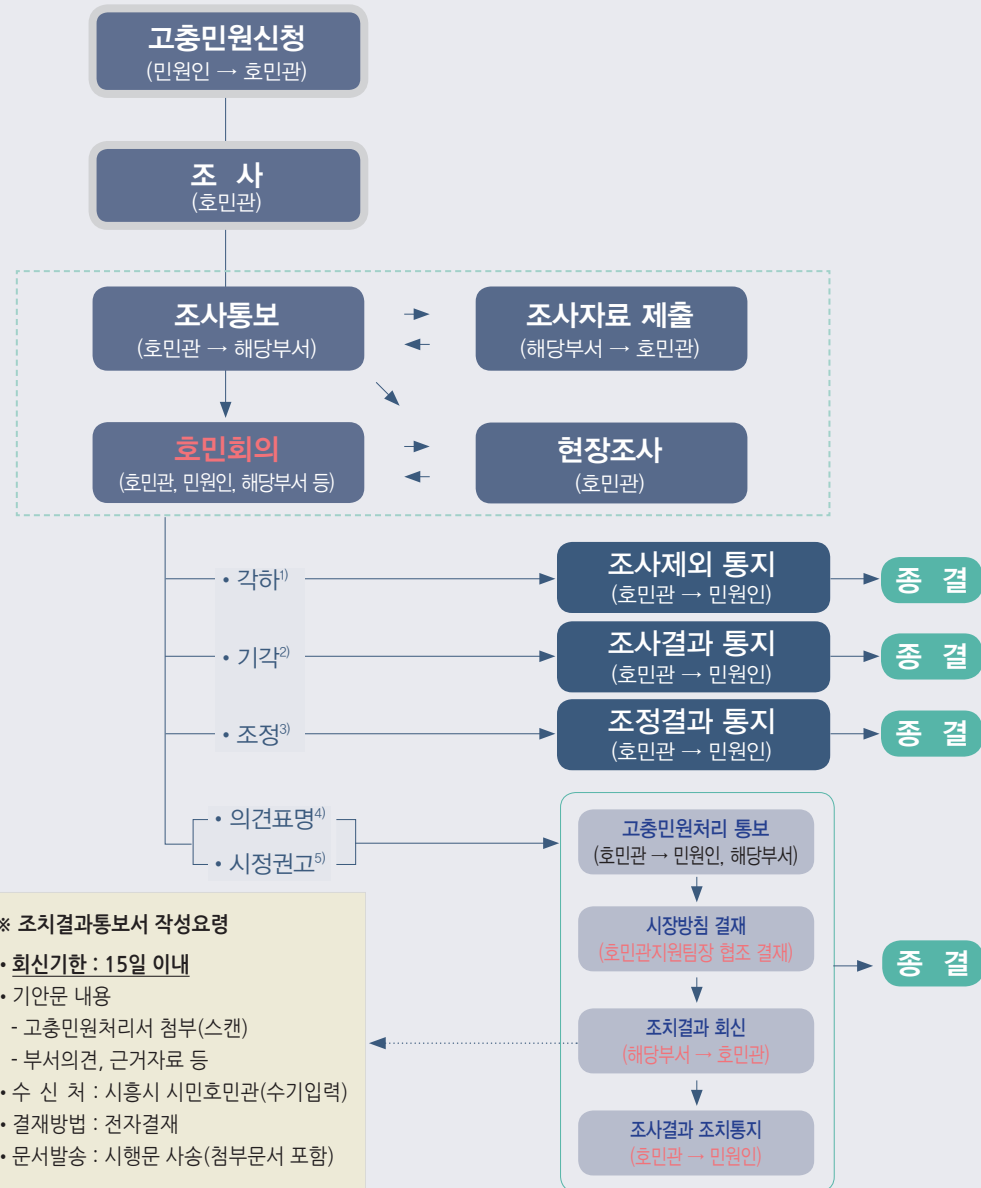


시민호민관 운영

1. 고충민원 처리 절차	16
2. 현장조사	17
3. 호민회의 운영	18
4. 시민자문단 구성 및 운영	19
5.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	22
6.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대외활동	23

02 시민호민관 운영

1. 고충민원 처리 절차



- 1) 각 하 : 사실관계 검토 결과,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사를 제외하는 경우
 2) 기 각 : 조사 결과, 제기된 민원의 타당성이 없거나 구제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조 정 : 조사 결과, 호민관의 의견표명 또는 시정권고 이전 호민관의 중재에 따라 해결되는 경우
 4) 의견표명 : 조사 결과,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시정권고 : 조사 결과, 행정처분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현장조사

고충민원 현장 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과 행정여건 등 정책적 요소를 고려한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권익구제

가. 추진방향

- 고충민원 조사·처리 과정에 현장조사 기능 필수화
- 중점 현장조사 분야 선정·관리
 - ➔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 지역주민 다수의 고충민원,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공사, 민원현장에서 조정이 필요한 민원 등

나. 추진현황



개발제한구역내 축사관련 민원



생계형 노점관리 및 보행환경 개선요구



동서로 진출입로 개설 요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GB대장 정정요청

3. 호민회의 운영

고충민원 이해관계인이 함께 민원의 원인과 내용, 양측의 주장과 판단근거를 공유·토론함으로써 상호이해를 통한 갈등 해소와 조정·중재의 계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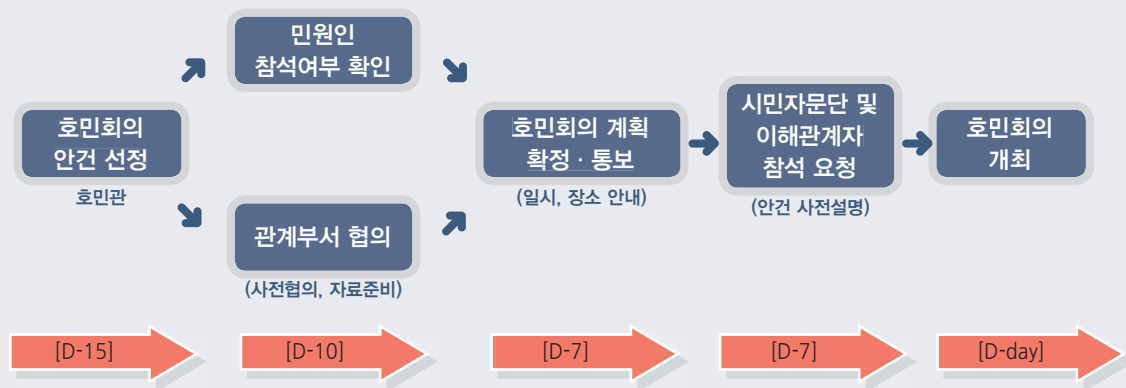
가. 추진방향

- 호민관 주재 하에 민원인과 관계부서 간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고충민원 해결에 필요한 판단요소 명료화 → **민원처리 효율성 제고**
- 민원인과 관계부서 간 상호이해와 호민관의 합리적인 중재를 통해 원만한 고충 해결방안 모색 → **고질·반복민원의 적극적 해결**
- 고충민원과 관련한 부서 합동회의를 통해 부서 간 칸막이 해소 → **복합민원의 효과적 대응**

나. 운영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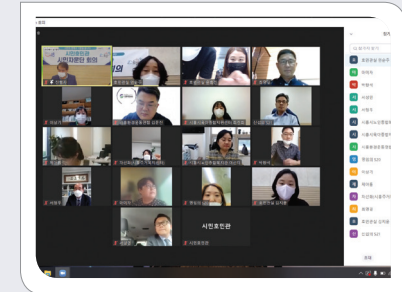
- 운영주기 : 수시(고충민원 사안별 판단)
- 참석대상 : 시민호민관, 시민자문단 및 이해관계자^①, 민원인, 관계부서^② 등
 - ① 고충민원 안전에 따라 관계분야 전문가 2~4인 구성
 - ② 관계부서는 부서장, 팀장, 담당자 참석
- 회의안전
 - 1) 고충민원에 대해 민원인 주장과 관계부서의 입장이 상이한 경우
 - 2) 다수의 부서 및 기관이 연계된 복합민원
 - 3) 호민회의를 통해 조정·중재가 가능한 사안
 - 4) 기타 호민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다. 세부 운영절차



4. 시민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고충민원 처리 등 호민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시민자문단 구성 및 운영



가. 설치근거

-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나. 운영개요

- 구 성 : 총 20명
 - 행정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호민관이 위촉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역 할
 - 고충민원 중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자문
 - 운영상황보고서(안) 검토
 - 호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 등
- 운 영
 - 자문단 회의는 연 2회 개최 (단장이 필요로 할 경우 수시개최 가능)
 -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문단원에 자문 요청

나. 구성현황 : 20명 (남 12명, 여 8명)

계	자격 및 분야											
	시 민 호민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인권 보호관	건축사	기술사	안전	환경	아동	언론	시민 단체
20	1	5	2	2	1	1	1	1	1	2	1	2

시민자문단



백종은
시흥시 제5대 시민호민관



이상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대표



임용관
(주)예승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최영길
(주)아띠건축사사무소 대표



정중호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세무사)



차선화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센터장



허 윤
법무법인 예울 대표변호사



이건희
이건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문진
시흥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장범수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장연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성민
서성민 법률사무소



마미자
시흥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



서정우
서정우 법무사



조진희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수
법무법인 바른



박향석
법무사 박향석 사무소



장금섭
장금섭 세무회계사무소



전성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김신섭
인천일보 기자

5.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권리구제 및 생활분쟁 해소

가. 운영근거 : 「시흥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운영개요

- 구 성 : 총 18명
 - 변호사(10명) : 김봉호, 유현주, 조성제, 임종문, 이일용, 이만용, 서성민, 장세윤, 제아름, 김병현
 - 법무사(8명) : 박원배, 이군성, 서정우, 장문석, 위 연, 박향석, 김대우, 송진호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현 법률상담관 위촉기간 : 2020. 8. 8. ~ 2022. 8. 7.
- 위촉방법
 - 변호사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산지회 추천
 - 법무사 :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시흥시지부 추천
- 상담장소 :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시민호민관 內)
- 상담분야
 -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시민생활에 관한 사항

다. 운영일정

구 분	구 분	운영시간	법률상담관	비 고
월	오전	10:00 ~ 12:00	변호사	생활법률 상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부동산, 파산 등)
	오후	14:00 ~ 16:00		
화	오후	14:00 ~ 16:00	법무사	

라. 운영실적

계	성 별		유 형				
	남	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복합
133	68	65	82	14	7	6	24

6.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대외활동

국내 옴부즈만 운영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의 역할 정립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국 지방옴부즈만협의회 활동 및 지자체 방문 컨설팅, 외부교육 등

가.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유공 단체 표창



나. 제2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021. 12. 1. (수) 세종정부청사
- 참석대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 37명
-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의장선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정책 추진상황 설명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정책·제도에 관한 의견 및 애로사항 등 수렴

다. 달리는 국민신문고(이동신문고) 운영

- 일시·장소 : 2021. 12. 16. (목) 시흥시청 글로벌센터2, 3
- 주 최 : 국민권익위원회, 시흥시
- 참여기관 :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안양시
- 참 석 자 : 65명(24건)
 - 국민권익위원회 및 협업기관 분야별 조사관 : 17명
 - 상담신청인 : 43명 (사전 23명, 당일 20명)
 - 시흥·부천·안산·광명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참관 : 5명

• 상담 접수 및 결과 : 24건

상담 결과	상담 분야	계	행정 문화 교육	국방 보훈 경찰	재정 세무	복지 노동	산업 농림 환경	주택 건축	교통 도로	생활 법률	노동 관계
계		24	1	2	2	2	6	1	3	5	2
즉 시 해 결	합의	2					1		1		
	상담	10		2				1		5	2
	단순안내	10	1		2	2	3		2		
권익위원회민원접수		2					2				



라. 타 지자체 시민호민관 방문(벤치마킹)

구분	아산시	부천시
일 시	2021. 4. 1.(목)	2021. 9. 14.(화)
방문자	- 감사담당관실 주무관 1명 - 시민옴부즈만 2명	- 민원조사팀장 - 담당주무관
내 용	• 옴부즈만 운영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 옴부즈만 활동 및 사무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 처리 현황 및 조정 사례 • 자문위원회 구성 절차 및 유의사항 • 옴부즈만 운영에 따른 고충사항 등	• 옴부즈만 운영현황 및 추진방향 • 옴부즈만 제도(시민호민관실) 운영관련 사항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과정 - 추천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시민호민관 운영성과

1. 총괄(2013년 ~ 2021년)	28
2. 2021년 고충민원 처리현황	29
3. 호민회의 운영현황	30

03 시민호민관 운영성과

1. 총괄 (2013년~2021년)

구분	고충민원 접수 처리 현황								제도개선	기타 안내
	계	조사중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중재	기각	각하	취하		
계	562	5	40	50	291	80	60	30	39	1,651
2013년	32	—	0	12	6	11	3	0	5	140
2014년	56	—	11	11	16	7	9	2	3	124
2015년	59	—	14	5	26	6	7	1	4	174
2016년	61	—	5	9	22	16	6	3	7	187
2017년	68	—	0	5	38	12	6	7	5	201
2018년	72	—	1	5	34	15	11	6	6	212
2019년	75	—	3	3	62	1	2	4	1	215
2020년	73	—	4	0	56	0	2	5	5	207
2021년	66	5	2	0	31 (+6) ⁶⁾	12	14	2	3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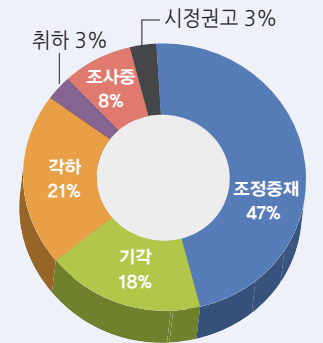
- 2013년 시민호민관 제도 도입 이후 고충민원 접수·처리 지속적 증가
 - 현장중심의 민원처리, 홈페이지 사례게시, 언론보도 등 홍보 활동
 - 호민관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한 민원인의 재방문사례 증가
 - 2021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소 방문민원이 감소되었음
- 상근독임제로 운영하여 고충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 호민관이 민원상담, 현장확인, 자료조사, 의견제시 등 운영 총괄
 - 복잡한 행정쟁송 대신 간편한 권익구제 성과 달성
 - 호민관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수용률이 100%로 실효성 담보
-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고충해결 기능 강화
 - 호민회의 도입으로 이해관계인 간 상호이해를 통한 조정·중재 계기 마련
 - 시민자문단 자문기능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 민·관 갈등관리 대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고충민원 응대 교육을 통해 공무원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민원대응 역량 강화

2. 2021년 고충민원 현황

① 고충민원 처리현황

구분	계	조사중	시정권고			조정 중재 (수용)	기각	각하	취하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부서 검토중				
2021년	66	5	2	—	—	31	12	1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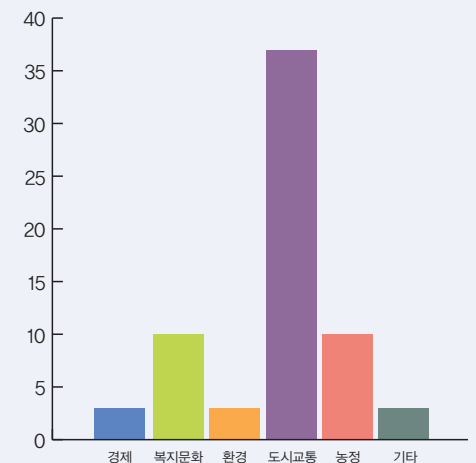
- 조정·중재가 성립하였거나 집행부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은 33건
 - 시와 고충민원 간 상호 이해를 통한 조정·중재 계기를 마련하여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 도출
 - 행정과 민간이 win-win할 수 있는 민원해결 방안 제시
 - 민원해결 기능 강화
- 집행부가 호민관의 의견을 전부 수용
 - 수용률 : 100%
 - 실효성 담보(권리구제 성과 달성)



② 분야별 고충민원 현황

계	경제	복지문화	환경	도시교통	농정	기타
66	3	10	3	37	10	3

- 고충민원 중 도시교통 분야가 37건, 농정 분야가 10건으로 접수된 고충민원 중 약 71%를 차지함
- 대부분의 고충민원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또는 토지보상 관련 민원으로 관련법에 따라 원만한 해결(조정·중재)이 어렵고, 기각·각하되는 경우가 많음



6) 추가된 6건은 당초 2020년 접수되어 2021년에 조정결정 된 사항임

3. 호민회의 운영현황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신청

[1차 호민회의 : 2021.1.8.(금)]

- 신청인은 0000공원 내 1998년 당시 토지 (☉☉동 ☆☆☆-☆, 전 1,018㎡ / ☉☉동 ★★☆☆-★번지, 대 251㎡)의 소유자로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대로 피신청인의 영업손실 및 지장물(수목) 보상을 촉구함.
- 신청인은 시에서 ■■■■■■■■공원 보상 관련하여 권익위 결정에 따라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가 후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함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남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청하였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어, 소송으로 가서 다룰 건지,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조례로 조정권을 보장 받고 있는 호민관에 접수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모든 억울함을 풀어나갈지, 접수 여부를 자리에서 상의해서 결정할 것. 권익위가 인정하고 있는 영업보상과 수목 보상 부분만 쟁점으로 사건처리를 해갈 것이며,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할 것.

000마트 용도변경 경위확인 (정보공개관련)

[2차 호민회의 : 2021.1.15.(금)]

- ☉☉동 000마트는 용도변경을 통해 대규모점포를 교묘하게 피한 케이스로 000마트에 대한 설계도면 정보공개를 요청함.
- 정확한 정보전달이 서로에게 신뢰를 쌓는 방법이므로 오랜 시간 동안 정보 요청을 해왔음에도 거 부당하고 재심의까지 했는데도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 이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더 키우기 전에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제공과 정확히 설명하는데 있음.
- 대규모 점포의 해당여부는 판매시설인지의 건축물 용도보다 실제로 판매에 제공되는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이자 법해석임. 따라서 1차 용도변경으로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 시설로 바뀌 어서 해당점포가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는 생각은 신청인들의 오해임.
- 피신청인은 면적관련 산정이 법상 쟁점이 많고 각 지자체마다 해석을 달리해가며 소송까지 하는 사례들이 많으니, 법령이 아닌 가이드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판단하지 말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살펴주기를 당부함.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정착보조금 지급요청

[3차 호민회의 : 2021.2.9.(화)]

- 2019년 4월 6일 보조금 신청 당시에는 차량 길이 12.9m, 총중량 32.9톤으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로써 2017년 7월 18일 (『교통 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행일) 이후 차로이탈 경고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이 지급' 되는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함.
- 신청인은 정당한 접수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신청인의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 장치를 적법하게 설치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사업은 2021년 6월까지 지속운영하고 있어, 보조금 예산도 잔존하고 있는 바, 보조금 지급 기준에 적합한 신청인의 요청에 대해 지급년도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적극행정에 반한다는 점에 대하여, 부서에서도 인용하였기에 조정 결정함.

0000공원 관련 보상요구 (편입해제 또는 조속보상)

[4차 호민회의 : 2021.2.19.(금)]

- 2008년 경 시흥시 ☉☉동 산☆☆-☆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으로 0000공원 구역으로 지정한 후 재산권 행사에 제약만 있고 그동안 사업시행이 없었으므로 조속히 보상을 해주던 지 아니면 시설결정을 해제 요청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집행 없이 장기간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도시계획 해제 후 재지정을 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임
- 호민관은, 도시계획결정 전에 보상계획 등 까지 충분히 검토 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예산 확보방안 수립 없이 도시계획 결정하는 관행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첫째, 해당 사업은 ●●지역의 타 민원 때문에 수립한 계획 이지만, 민원을 이유로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시설해제 여부를 살피고,
둘째, 계속 공원조성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바, 사업에 꼭 필요한 면적이 어디까지 인지 재 검토 해야 하며,
셋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가 농어촌공사와 신청인 뿐이고, 신청인의 경우 이 일대 소유 토지 전체가 편입되는 바, 사업의 진행 단계별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정보 공유가 이루어 지도록 할 것

대체기관장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인과 가점부여 명시 (점수)

[5차 호민회의 : 2021.2.22.(월)]

- 신청인은 시흥시 관내 ○○ 어린이집의 대체원장으로, 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두 명의 아동학대가 있었던 기관이지만, 신청인은 아동학대사건 이후 대체원장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며 학대 당시 원장도 아니었고, 아동학대 사건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어린이집평가에서 아동학대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최하위 등급을 받음. 또한, 대체원장으로 선정 공고 시 가점부여 안내가 있었음에도 구체적으로 기간 및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바 시정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어려운 시기에 대체원장으로써 임무를 수행한 경우, 향후 절차 안내는 기본에 해당함. 가점 부여는 공고 시 명시한 부분이니 이행 방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개인에게 감점을 주게 되면, 어느 누구도 대체원장에 응시하지 않을 것이므로, 반드시 제도개선 되어야 함. 제도가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어떤 방법으로 구제해야 할 지 검토할 것.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취소요청

[6차 호민회의 : 2021.3.26.(금)]

- ◎◎동 ☆☆☆-☆ 필지는 시흥~서울 연결도로 사업 신천 IC 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될 예정으로, 농지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고, 대부분이 도로 완충녹지이며 6차선 간선도로를 지지해주고 있는 옹벽·축대(8미터 높이) 역할을 하고 있어 농지로 사용될 수 없는 곳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 의하여 중복 처벌을 받고 있으므로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취소요청
- 매입당시에는 토지가 아스팔트가 아닌 흙 상태였고 토지거래허가 입법목적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취득하면 안 됨.
- 부서에서는 매매계약을 살펴 공식적인 통보를 하고, 「시흥~서울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신천IC 시설지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확정된 것이므로, 신청인 토지 편입여부를 예민하게 살필 것.
- 처음 취득 시 농지 형상이 아닌데 취득 후 농지로 사용하라고 압박하거나 사업에 편입되는 것이 바로 확정된다면, 사업 확정 이후에 매각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살피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편입확정에 이르기 전이고, 현장조사 시 실측을 해보았지만 사면 일부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현 단계에서 처분명령이나 부과처분 취소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다행스럽게도 신청인이 매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처분명령이행 종결토록 하여 조정 성사됨.

폐천부지 대토보상, 소하천편입지 보상

[7차 호민회의 : 2021.3.31.(수)]

- 시흥시 ◎◎동 ☆☆☆-☆의 토지 소유주로, 하천 유역이 변경되어 신청인 소유 토지 일부가 소하천으로 편입되어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재산가치를 상실한 상태이며, 10여년 전 국민권익위원회와 시흥시 해당부서 간에 소하천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 토지와 폐천부지(하천)의 교환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 시정 요청함.
- 소하천정비법 제24조의2에 의하면 폐천부지 등은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아무리 국토부 소유라 하더라도 시민을 위하여 부서는 중앙에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함. 민원인의 처음 매입당시 하천인지 모르고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정황은 이해되나 주장의 한계는 많음. 권익위의 합의서 당시 권익구제를 챙겼어야 함.
- 폐천부지는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 하여야 하나 더 이상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돌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천부지를 이미 하천구역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 및 양여 가능한데 15년 넘게 점·사용허가를 주고 있는 점에서 이 폐천부지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교환에 대한 기초 작업 절차는 이행해야 함.

첫째, 기본계획수립에 맞춰 법상 행정에게 의무가 있는 폐천부지를 관리(고시)할 것. 둘째, 아직 보상이 안 된 미지급용지이고, 1년이 지난 감정평가는 재평가해야 하므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당연함. 과거 현황까지 알려주어 참고토록 할 것. 셋째, 폐천부지로 교환을 위한 법정요건을 살피고, 추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자산 이관 시, 교환 절차 이행에 대한 호민관 결정문을 송부할 것.

기존건축물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요청

[8차 호민회의 : 2021.9.15.(수)]

- 사건 토지의 건축물 실존여부 확인을 위해 화재 당시 마을주민 면담과 주민등록 거주자 확인 및 인근토지 구 건축물 대장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화재로 소실된 주택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동 ☆☆☆-☆번지보다는 인접토지인 ◎◎동 ★★번지상 건물로 보임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물증 없이 실존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공무원이 임의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등재할 수 없음
- 행정심판 결과 : 화재발생 장소는 ◎◎동 ☆☆☆-☆번지가 아닌 ◎◎동 ★★번지인 바, 신청인의 주장과 다르다며 인정되지 않음.

OOOO공원 조성관련 누락된 영업손실 및 지장물(수목) 보상 요구

[9차 호민회의 : 2021.7.1.(목)]

- 영업보상관련 감정평가서는 현행법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규정만 보고 적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영업이라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회신이 온 것이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 4. 12.> 제3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다시 감정평가 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함.
- 오랜 시간 보상이 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지장물(수목) 관련 보상은 신청인이 제출한 수목 목록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상대로 감정평가 진행해야 할 것임.
- 피신청인이 권익위와 신청인에게 권익위의 의결대로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공문 시행 후 담당자가 바뀌고 보상을 거부한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적법하고 조속한 보상을 하도록 시정권고 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취소 및 원상복구 관련 고충

[10차 호민회의 : 2021.10.19.(수)]

- 신청인은 불법형질변경(성토), 공작물설치, 물건 적치행위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및 원상복구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음.
-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원상복구가 궁극적 목적인 바,
- ○○○에서는 적극적으로 원상복구해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취소 불가함.
- 또한 ○○○에서 원상복구 의지가 있으므로 건축과에서는 사토장 확보에 협조하고 불법 영농행위 철거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 바람.

○○동 풋살구장 클럽하우스 용도변경 (기타운동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11차 호민회의 : 2021.11.29.(월)]

- 본 사업은 우리시의 지역 활성화와 생활스포츠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시흥시와 신청인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해오는 사업이나 관련 언론보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담당부서는 해당 시설의 용도변경이 공유재산법상 공공용재산에 대한 공익적 활용으로 보여지기 보다는 특혜로 오인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음. 신청인은 시흥시의 제안으로 시설투자(기부채납)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운 실정임. 건축과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베이커리 진열대를 원상복구하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향후 컨설팅 결과에 따라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길 바람.





시민호민관 주요사례

1. 고충민원 결정례	37
① 경제분야	40
② 복지·문화분야	44
③ 환경분야	54
④ 도시·교통분야	66
⑤ 농정분야	86

시민호민관 주요사례



고충민원 결정례

① 경제분야

1-1

OO마트 용도변경 경위확인(정보공개관련) - 조정



1. 고충민원 개요

- 신청인은 OO마트 용도변경 과정에서 일어났던 행위들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 정보공개를 통하여 설계도면 등을 획득하고자 하였으나 해당부서로부터 정보공개가 계속 거부되어 고충민원을 신청함.
- 신청인이 원하는 주된 목적은, OO마트가 이미 입점이 되었으니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로 정당하게 등록하여 주변 상권과 품목 및 가격제한 등 상생방안을 찾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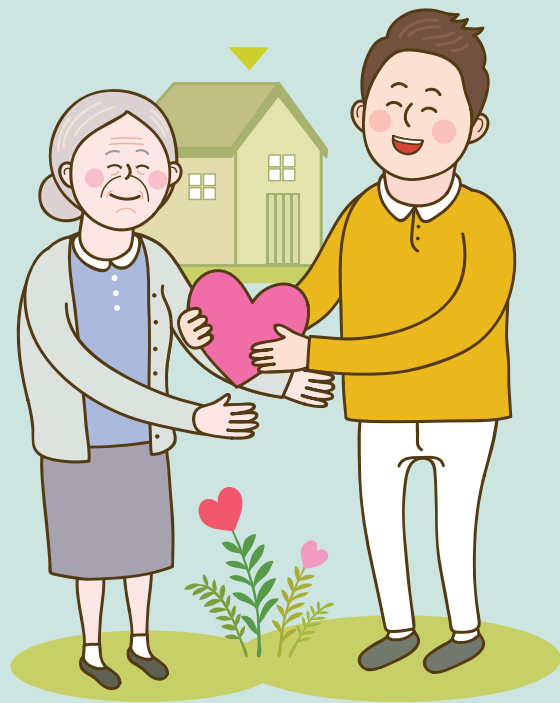
2. 처리 결과

- 신청인은 대규모점포 입점으로 인해 전통시장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1년여 넘게 주장해 왔음에도 시에서는 용도변경까지 해가며 대규모 판매시설을 허가해 주어 용도변경 과정에서 일어났던 행위들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통하여 설계도면 등을 획득하여 정확하게 면적을 산정해 보고자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계속 거부되어 호민관 제도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 시민호민관에서는 민원 경위, 관련법령 검토, 부서 의견청취 및 '21. 1. 14.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21. 1. 15. 각 부서(주택과, 소상공인과)와 신청인 및 관계인이 참석한 호민회의 시 제공 가능한 정보 및 도면과 이에 따른 설명을 하였으며, 민원인이 요청한 OO마트 관련 전체개요, 1차 및 2차 용도변경 개요와 면적산출 근거 및 도면과 이 사업 관련 용도변경 신청내역, 이에 관한 부서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2021. 1. 22.



시민호민관 주요사례



고충민원 결정례

② 복지·문화분야

2-1

대체기관장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인과 가점부여 명시(점수) - 조정, 제도개선



1. 고충 개요

- 2019년 4~5월경, 시흥시 관내 시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기존 위탁 취소 후, 2019년 7월, 해당 어린이집 대체원장 모집시 세부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가점 부여 공고가 있었고, 신청인은 이에 응시 및 선정되어 대체원장으로 근무하였고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1년 1월, 해당 어린이집 변경 위탁모집시 신청인에게 당시 공고했던 가점이 부여되었는지 여부 및 가점 부여의 정확한 기준을 알려줄 것을 요청함.
- 신청인은 본인이 위탁하기 전에 발생했던 아동학대를 이유로 어린이집 평가가 최하위 등급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향후 여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신청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이를 개선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함.

가. 당사자

- 신청인 : ○ ○ ○
- 피신청인 : 시흥시장(아동보육과장)
- 관계인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 결정

가. 주문

-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1) 피신청인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0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 기준」 [별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공통심사 기준표의 심사항목 중 3.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세부항목 중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 관련, '위탁체 신청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최하위 또는 차하위 등급 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정 전 평가등급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절차를 이행한다.
 -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흥 관내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시 2점의 가점을 총 2회 부여한다.
 - (3) 피신청인은 관계인이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부여한 최하위 등급을 취소하고, 차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관계인에게 재검토를 신청한다.

나. 이유

- 불임과 같다.

〈불 임〉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신청인은 2019. 7. 29.부터 시흥시 ☆☆☆ 소재 시립◎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체원장으로 선정되어 2021. 2. 28.까지 근무한 자료,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9년 4월~5월경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던 기관이나, 신청인은 아동학대 발생 당시 원장도 아니었고, 아동학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체원장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중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의 세부항목인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에서 관계인의 종합평가 심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향후 여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모집 신청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평가제도는 부당하니 시정하여 달라.
- 2019년 7월, 대체원장 모집공고 당시 가점부여 세부기준이 명시되지 않은바, 2021. 1. 이 사건 어린이집 변경 위탁모집 신청시에 위의 가점이 제대로 부여되었는지, 앞으로 시흥시에서 보육 관련 시설 위탁모집에 신청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할 것인지 알려 달라.

나. 피신청인

- 이 사건 어린이집 대체원장 선정은 아동학대가 있었던 기관의 현장을 수습하고 안정시키는 노고를 인정하고자 향후 위탁운영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열린 어린이집 인센티브 부여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2021년도 이 사건 어린이집 변경 위탁모집 평가시 2점의 가점을 부여하였고 이는 1차 서류전형 40점 만점의 5%에 해당하므로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에게 향후 시흥시 보육관련 시설 위탁모집 공고시 2점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업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 대체원장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에 아동학대 발생 당시 원장(이하 '기존 수탁자'라 한다)의 행정소송 여부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 또는 중도해지 가능하다는 것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바, 2020. 12. 29. 해당 소송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1. 1. 15. 자료 새로운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고, 그 후 대체원장 근로 계약 해지사항에 대해 안내하였다.

2. 관계법령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0조, 제51조의2 제1항 제4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및 [별표 8의2], 제31조 제4항

- 「시흥시 보육 조례」 제11조 제4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0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 기준」 및 [별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 한국보육진흥원 「2021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 보건복지부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3. 이 사건의 판단

가. 민원경위

- 2019년 4월에서 5월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두 명이 아동학대를 행하였고, 기존 수탁자에게 민간위탁취소처분이 이루어졌다. 피신청인은 2019. 7. 16. 이 사건 어린이집 대체원장 모집공고 하였다.
- 신청인은 위 대체원장 모집에서 9명의 응시자 중 최고점을 받아 선정되었고, 계약기간을 '2019. 7. 29.부터 2020. 2. 29.까지로 하되, 기존 수탁자의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여부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어린이집 기존 수탁자가 제기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취소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되었고 2020. 12. 29. 확정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2021. 1. 15. 시흥시 홈페이지에 이 사건 어린이집 변경 위탁운영체 모집을 공고하였고, 2021. 1. 18. 신청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계약기간이 2021. 2. 28.로 만료된다는 안내를 하였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변경 위탁운영체 모집에 새로이 응시하였으나, 1차 정량평가에서 당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참여는 하였으나 통과여부가 미정여서 7점을 받았고, 가점 2점이 부여되었으나 탈락하였다. 그 후, 신청인이 위탁하기 전에 발생했던 아동학대로 인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항목 중 '위탁체 ·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에서 최종적으로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다.

나. 호민회의

- 호민관은 2021. 2. 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정처분을 행정기관 스스로 바로잡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호민회의를 개최하였다.
- 신청인은 본인과 아무 관련 없는 아동학대 발생 사실로 인하여 관계인의 종합평가 심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향후 어느 어린이집이나 관련 기관의 서류 심사를 사실상 통과할 수 없게 되어 분노에 가득 차 평가의 부당성과 아울러, 대체원장 모집 공고 당시 부여하겠다고 명시했던 가점이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 피신청인은 2019년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대체원장 선정 공고 당시 아동학대가 있었던 기관의 현장을 수습하고 안정시키는 노고를 인정하고자 향후 위탁운영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므로 2021년 이 사건 어린이집 (변경)위탁운영체 모집 평가시에 2점의 가점을 부여하였고,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어린이집 평가 제도의 불합리

성에 대해 공감하며, '어린이집 평가제도 및 평가 등급 결정, 신청인에 대한 가점 부여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며, 이후 제도개선 절차 이행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호민관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어려운 시기에 신청인이 대체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고, 피신청인이 향후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은 기본에 해당하며,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나, 기계가 아닌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피신청인이 각 민원 당사자와 얼마나 소통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음에 주의하는 한편, 이 사건 어린이집 대체원장 근무에 대한 가점 부여는 공고시 명기한 부분이므로 이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관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무관한 기관장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 어느 누구도 대체원장에 응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반드시 제도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을 역설(力說)하고,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실효적인 구제방법에 대하여 모색할 것 등에 대하여 부서에 강조하였다.

다. 자기책임 원리 위배

- 신청인은 아동학대 발생 당시 원장이 아니며, 아동학대 보육교사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어 신청인이 대체원장으로 선발되었음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받은 최하위 등급 점수는 향후 여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에서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여부' 개인평가 항목에서 최하점인 3점을 받게 되는바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수탁자가 되거나 수탁업체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도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없다.
- 헌법재판소는 자기책임의 원리와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는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4. 6. 24., 2002헌가27 결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일정한 경우 외에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별표8의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0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 기준」(2020. 2. 24. 일부 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3. 위탁체·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35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	• 참여하여 통과 • 참여하였고 통과 여부 미정 • 미참여, 불인증, 평가등급 C·D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 7년 이상~10년 미만 • 5년 이상~7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3년 미만	10 7 5 3 1
		- 공모사업 수상실적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5
		- 관련 법령 이해 수준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 운영의지		8
		- 향후 발전계획		6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어린이집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대표자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평가시 자기책임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아동학대 발생과 무관한 대체원장 또는 그 직을 이어받은 자에게 평가시 최하점을 부여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한계를 넘는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제도개선 함이 상당하다.

라. 가점의 부여

- 피신청인이 행한 2019. 7. 16. 시흥시 공고 제2019-1835호 이 사건 어린이집 대체원장 모집시 '10. 기타사항 라. 대체원장 선정대상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근무 시작일로부터 1년 경과 이후 시흥시 보육관련 시설 위탁 공고시 가점 부여'라고 명시하였으나, 가점의 기준이나 횟수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 가점 부여의 세부기준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10년 이내에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통과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만점으로 평가하는 개정 이전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4호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 기준」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 신청인은 1년 6개월 이상 이 사건 어린이집 대체원장으로 근무하여 공고상의 가점부여 조건을 충족하였고, 사회상규상 아동학대 발생 이후, 어려운 시기에 대체원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수습한 신청인으로서 본인에게 유리한, 종전 관행을 적용하여 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생겼을 것이고 이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 피신청인은 2021. 1. 이 사건 어린이집 변경 위탁모집시 1차 정량평가 40점의 5%인 2점을 부여하여 적절한 가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관내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은 평균적으로 1년에 2회 실시하므로, 향후 시에서 공모하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에 연속하여 응시하는 경우에만 추가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 신청인은 평가제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 받지 않았다면, 만점이 가능함에도, 다른 지원

자들과 최대 7점의 차이가 생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제시한 가점은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나 특정인에게 무기한으로 정량평가 40점의 5%인 2점을 초과하여 가점을 부여한다면, 이는 신청인 외에 다른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제시한 가점 기준인 2점을 총 2회 연속하여 시흥 관내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운영 모집 공고시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 어린이집 평가시 최하위 등급 조정의 위법·부당 여부

-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온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되어 미인증 어린이집으로 인한 질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였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 인권 및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인해 전체 어린이집 평가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8. 12. 11.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2019. 6. 12.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었다.
- 어린이집 평가제의 기본방향은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고,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제5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평가업무는 관계인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 어린이집 평가대상 선정통보가 이루어진 월 이후 평가대상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아동학대)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최하위 등급(D등급)이 부여되고,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포함)에는 종합평가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된다고 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275쪽, 한국보육진흥원 「2021 어린이집 평가매뉴얼」 24쪽, 26쪽, 36쪽 및 38쪽).
-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8. 3. 개원 이후, 2018. 7.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해 2019. 12. 인증취소를 받았고, 2019. 6. 12. 어린이집 평가제로 시행된 이후, 2020. 2. 평가제 선정통보를 받았다.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행위 등 법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처분하여야 한다.
- 위 평가 매뉴얼 38쪽에서 '법 위반 및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차기 평가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과 달리,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위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이 사건 어린이집이 과거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평가 절차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차하위 등급 조정 처분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럼에도 관계인은 「2021 어린이집 평가매뉴얼」 36쪽의 종합평가 과정 중 변동사항에 해당하는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에서 선정통보월 이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이 1, 2, 3, 4 영역에서 모두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조정된 것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 시민호민관은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법령 및 평가현황 조사, 판례 검토, 호민회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주장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바, 공정한 행정구현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21.



2-2

생계급여 수급신청 관련 누락(4월~6월) 소급 - 조정

1. 고충민원 개요

- 신청인은 기존에 오랜 기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던 자로, 소득 발생으로 수급이 중단되었다가 산업재해를 입어 다시금 수급을 회복하고자 담당자 메일을 통하여 신청하였으나 처리가 진행되지 않음
- 담당자는 이전에 급여 수급 당시 제출했던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 필수 서류를 요청하지 않음
- 이로 인하여 수급 신청이 누락되었고 그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받지 못한 부분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함

2. 처리결과

- 신청인은 기존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았고(2004. 8. ~ 2021. 1.), 취업으로 인한 소득 발생으로 급여 수급이 중단되었으나, 산업재해로 인하여 소득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급여가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2021. 4. 26. 시청 담당자 개인 메일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였으나, 2021. 6.까지 신청에 의한 조사 등 처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이견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시 필수 서류인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외 근로능력판정진단서 및 의료기록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시청 담당자는 신청인의 이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당시 제출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신청 같음한 것으로 추정)
- 시민호민관에서는 관련법령 검토 및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신청인은 이전에 오랜 기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던 자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시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랐을 뿐이고, 신청에 의한 조사 및 급여 실시 등에 대한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실과 현재 산업재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고충민원을 조속히 처리하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할 것을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2021. 8. 20.

시민호민관 주요사례

고충민원 결정례

③ 환경분야





3-1

OO저수지 수질 등 환경개선 - 조정

1. 고충민원 개요

- 수십 년 간 낚시로 인해 소음, 먼지, 쓰레기 및 주차문제 등 발생으로 불편 심화
- 저수지 주변 침전물로 인해 부패, 바람 불면 썩은 냄새(녹조발생)
- 협소한 농로에 낚시 온 차량으로 인해 통행불편(성수기 교통마비)
- 수질악화로 지하수에서 물비린내로 지하수 사용 불가

2. 처리결과

- 신청인은 OO저수지 낚시로 인한 소음, 먼지, 쓰레기 발생 등 주변 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으며, 시민호민관에서는 민원경위 및 축수산과, 생태하천과, 환경정책과, 국책 사업과 등의 자료를 제출 받아 관련법령 검토 및 부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시민호민관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각 부서별로 2021년도 1월~12월 상류지역 폐수배출업소 및 무허가시설 점검, 2월 수질측정망 운영, 3월 우심하천 수질모니터링 실시 등 단기적으로는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역할 분담으로 수질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OO저수지 상류지역의 하수관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계획 등 지속적으로 시가 관심을 갖고 OO저수지의 수질을 개선코자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시흥시 의회에서는 저수지 상류지역을 광명시흥지구에 편입시키는 것을 논의하고 있고, 호민관실에서 2021. 3. 8. OO저수지 주변과 상류 공장지 등을 현장점검 한 결과, 현 계절적 상황에서 소음, 먼지, 냄새가 심하지 않아 성수기 또는 극성수기에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2021. 4. 12.



3-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오납 - 제도개선

1. 고충민원 개요

가. 신청요지

- 신청인1과 신청인2는 각 지상에 있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 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한 총 오수량을 제외하고 산정 및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부과·납부한 부분만 제외하였기에 과오납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을 요청함.
- 신청인2가 신축한 건축물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으로써 오수량은 '단독주택 용도'로,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공동주택 중 다중주택용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라 과오납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을 요청함.

나. 당사자

- 신 청 인 : 1. 0000건설(주)
2. (주)00건설
- 대 리 인 : 0 0 0
- 피신청인 : 시흥시장(하수관리과장)

2. 결정

가. 주문

피신청인은

- (1) 환경부 고시 제2021-59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별표] 및 환경부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업무편람」(2021. 03)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일괄적으로 '단독주택용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 (2)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별표5]에 '신축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에서 '철거된 기존 건축물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 및 납부한 상당의 오수량'은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개선 절차를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나. 이유

- 불임과 같다.

〈붙임〉

이유

- 환경부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업무편람』(2021. 03), (2015. 07), (2012. 10)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신청인1은 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지상에, 신청인2는 ■■■동 ★★ 외 6필지에 있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신축 건축물 건축주에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각 납부하였다.
- 피신청인은 위 각 신축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에서 기존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중 부담금을 부과·납부한 부분만 제외하였는데, 각 신축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에서 기존 건축물의 총 오수발생량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신청인들이 납부한 부담금 중 과오납 부분을 환급하여 달라.
- 신청인2가 신축한 건축물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으로써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별표] 기준에 따라 오수발생량은 '단독주택용도'로,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공동주택 중 다중주택용도'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일괄적으로 '단독주택용도'로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 과오납된 부담금을 환급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 부담금은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발생하는 오수량에 따라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기존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중 부담금을 부과 및 납부한 부분만 제외하여야 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은 환경부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업무편람』(이하 '이 사건 업무편람'이라 한다)에서 '단독주택용도'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오수발생량 산정 시에도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용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등

-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35조 제1항
-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별표5]
-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제2015-133호, 제2012-144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 환경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Q&A』

3. 이 사건의 판단

가. 민원경위

- 신청인1은 ○○동 ☆☆☆번지상의 기존 건축물 철거 후에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피신청인은 2019. 9. 24. 신청인에게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 오수량 48,0986(m³/일)에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별표6]에 따른 부담금 단위단가 1m³당 1,436,440원을 곱하여 산출한 69,090,750원을 납부하라고 하였고, 신청인1은 2019. 10. 1. 위 금액을 완납하였다.
- 신청인1은 2020. 11. 18. 피신청인에게 '신축 건축물의 오수량 48,0986(m³/일)에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된 총 오수량 18,1093(m³/일)을 공제한 29,9893(m³/일)에 대하여만 부담금을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전체 오수량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 및 납부하였으므로, 과오납한 26,012,9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환부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20. 12. 31. 거부 통지하였으나, 2021. 3. 10.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된 오수량 중 부담금을 부과·납부한 8,516(m³/일)에 대한 과오납한 금액 12,232,723원과 환부이자 317,916원을 합한 12,550,639원을 환부하였다.
- 신청인2는 □□동 ★★ 외 6필지상의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피신청인은 2017. 6. 21. 신청인에게 신축 건축물의 오수량 76,2358(m³/일)에 이 사건 조례 [별표6]에 따라 그 당시 부담금 단위단가인 1m³당 1,090,300원을 곱하여 산출한 부담금 83,119,890원을 납부하라고 하였고, 신청인2는 2017. 6. 21. 위 부담금을 완납하였다.
- 신청인2는 2020. 8. 피신청인에게 '신축 건축물의 오수량 135,2093(m³/일)에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된 총 오수량 83,3853(m³/일)을 공제한 51,8240(m³/일)에 대하여만 부담금을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전체 오수발생량을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것과 이 사건 고시 [별표]에 따라 개별취사시설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오수량은 예외적으로 단독주택 용도로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공동주택 용도로 잘못 산정하여 부과한 부담금에 대하여 이전에 신청인2가 완납했던 부담금 전액(全額)을 환급하여 달라'는 환부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21. 2. 2. 도시형 생활주택의 오수량을 공동 주택 용도로 산정하였던 135,2093(m³/일)에서 단독주택 용도로 산정한 오수량 105,3093(m³/일) 차이에 대한 과오납한 금액 32,599,970원(=29.9(m³/일)×1,090,300원)과 환부이자 2,126,912원을 합한 34,726,882원을 환부하였다.

○ 신축건축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

(단위 : 원)

건축물 위치	건축주	오수량(m³/일)	부과액	부과일자
○○동 ☆☆☆	신청인1	48,0986	69,090,750	2019. 9. 24.
□□동 ★★	신청인2	76,2358	83,119,890	2017. 6. 21.

○ 기존(말소)건축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

(단위 : 원)

건축물 위치	건축주	오수량(㎥/일)	부과액	부과일자
○○동 ☆☆☆	신청인1	3,2227	1,438,610	2004. 4. 22.
		1,4735	657,770	2005. 4. 8.
		3,725	1,819,690	2006. 4. 13.
		0,094	46,310	2006. 4. 14.
□□동 ★★★	신청인2	4,3776	3,538,410	2003. 11. 13.
		0.9462	764,810	2003. 11. 17.
		6,5664	5,307,620	2004. 2. 17.
		1.983	1,602,850	2004. 8. 6.
		4,3438	3,746,000	2007. 4. 12.
		17,0064	17,126,630	2010. 10. 28.
		18,0813	18,209,130	2010. 11. 22.
		5,6688	5,708,880	2011. 7. 15.

○ 환부 산정내역

1) 신청인1(○○동 ☆☆☆)

(단위 : 원, 원 단위 절사)

당초 부과				신청인1 요구			피신청인 변경			환부액 (가-나) 환부액 (가-나)
부과 기준	오수 증가량 (신규- 기준)	산정 단가 (조례 [별표6])	부과액 (가)	부과 기준	오수 증가량 (신규- 기준)	환급요구액	부과 기준 (변경)	제대로 된 오수 증 가량	제대로된 부과액 (나)	
신규 건축물만 계산함	48,0986 (㎥/일)	1,436,440	69,090,750	기존 건축물 전체 오수량	48,0986 -18,1093 =29,9698 (㎥/일)	69,090,750 -43,049,819 =26,012,920	기존 건 축물 부과분 제외	48,0986 -8,516 =39,5826	39,5826 x1,436,440 =56,858,027	환부액 12,232,723 이자액 317,916 총 계 12,550,639

2) 신청인2(□□동 ★★★)

(단위 : 원, 원 단위 절사)

당초 부과				신청인2 요구			피신청인 변경			환부액 (이자액포함) (가-나)
부과 기준	오수 증가량 (신규-기준)	산정단가(조례 [별표6])	부과액 (가)	부과 기준	오수증가량 (신규-기준)	환급요구액	부과기준 (변경)	제대로 된 오수 증가량	제대로된 부과액 (나)	
기존 건축물 부과분 제외	135,2093 -58,9735 =76,2358 (㎥/일)	1,090,300	83,119,890	1. 기존 건축물 전체 오수량	135,2093 -83,3853 =51,824 (㎥/일)	83,119,89 56,503,707 =26,616,100	1. 기존 건축물 부과분 제외	-	-	-
기존 건축물 부과분 제외	135,2093 -58,9735 =76,2358 (㎥/일)	1,090,300	83,119,890	2. 단독주택 용도 계산	64,2093 -58,9735 =5,2358 (㎥/일)	오수증가량이 1 일 10㎥ 미만인 므로 50,519,920	2. 개별취사 시설 있을 경우 오수발 생량은 예외 적으로 단독 주택용도 적용	105,3093 -58,9735 =46,3358	46,3358 x1,090,300= 50,519,922	83,119,890- 50,519,920 =32,599,970 이자액 2,126,912 총 계 34,726,882

나.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 공제 부분

- 신청인들은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시 기존 건축물의 오수량은 이 사건 조례 [별표5] 하단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총 오수발생량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하수도법 시행령」이 2007. 9. 27. 개정된 취지는 과도한 부담금의 기준을 완화하여 증가된 오수량만 부과하게 하고, 1일 10㎥ 미만의 ‘비교적 적은 양’의 오수가 발생할 때 부담금 징수를 면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1일 10㎥ 이상의 오수발생량에 대해서 까지 부담금 부과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증가된 오수량을 계산할 경우, 이 사건 조례 [별표5]에 따르면 증축 및 신축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한 오수량이 부과·납부되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수회에 걸쳐 용도변경 및 증축 등으로 인한 오수증가량이 1일 10㎥ 기준에 미달되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규 오수발생량과 더한 후 그 총 오수량이 기존 오수량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담하도록 산정방식이 설계되어 있다 (만일 기존 건축물의 총 오수발생량을 모두 공제한다면 1일 10㎥ 이상의 오수발생량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 또한 환경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Q&A」 14쪽의 ‘01 : 구 건축물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의 기본 원칙인 신축되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에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한 오수량을 제외함을 설명한 것이고, ‘02 : 구 건축물에서 부담한 부과금의 승계여부’는 구체적으로 기존 건축물에서 부담한 부과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에서 부담한 금액은 납부한 금액만큼 공제하여 부과함을 설명하고 있는 바, 이는 기본 원칙과 그 산정의 구체적 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각각 「하수도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였는데, 환경부에서는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의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에 대한 부담

금을 소유주가 기 납부하였다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이중부과금지 원칙’에 따라 추후 신축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기 부과·납부된 오수량은 공제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회신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들의 기존 건축물의 전체 오수발생량을 공제하여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신청인1에 대하여는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한 오수량 중 부과금을 부과·납부한 부분에 대한 과오납금은 이미 환부하였으며, 신청인2에 대하여는 신축 건축물 오수발생량에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한 오수량 중 부과금을 부과·납부한 부분을 공제하고 산정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다. 명확성 원칙

- 명확성 원칙은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바, 이에 따라 법규범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7 결정 등).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규범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규범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규범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결정).
- 또한 일반적이거나 불확정된 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도 당해 법규범의 입법목적과 다른 규정들을 원용하거나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명확성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바34 결정).
-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면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부담금 취지에 비추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나, 부담금 제도 자체가 권익 침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담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이 사건 조례도 수범자(受範者)가 예측할 수 있는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이 사건 조례는 이 사건과 같이 기존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적용될 직접적 규정을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별표5] 등을 통하여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하여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제할 오수량이 이미 부과된 부담금 징수 여부의 기준이 된 오수발생량(1일 10m³를 초과한 양)인지 아니면 기존 건축물의 총 오수발생량인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게 여겨진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오수량 공제와 관련하여 부담금 납부 입증책임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신청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또한 신축 건축물 오수발생량에서 기존 건축물 오수량을 공제하는 방법과 관련 법령 등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및 안내의 부재로 혼란이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라. 신청인2의 신축 건축물 용도에 따른 오수발생량 수정 요청

- 이 사건 고시는 부담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 사건 고시 [별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위 기준의 수치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위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비슷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 사건 고시의 [별표] 기준 ‘4. 산정방법-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6)’에 의하면,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은 면적을 곱하여 각각 산정하며, 명확한 정원 산정 근거가 있는 건축물 용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기숙사, 고시원, 다중주택을 제외한 주거 시설의 총 오수발생량은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 이 사건 고시에서 건축물 용도 중 주거시설, 공동주택 중 기숙사,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이 개별취사시설이 없고 정원이 명확한 경우에는 면적으로 계산하는데, 2015년부터 이 사건 고시 [별표]의 주거시설 중에서 면적 기준으로 오수발생량을 산정하던 공동주택용도의 기숙사,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에 개별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인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단독주택 산정방법으로 통일하였다.
- 신청인2의 신축 건축물 1동 1층은 소매점으로, 이 사건 고시 [별표] 및 이 사건 업무편람(2021. 03)에 따르면, 오수발생량은 면적(1040.62㎡) X 1일 오수발생량(15L/㎡) = 15.6093(㎡/일)이고, 그 외 2~14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이다.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주택법에 2009. 2. 3. 개정 및 같은 해 5. 4. 시행하면서 규정된 용도로, 현행 주택법 제2조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1) 원룸형 주택, 2) 단지형 연립주택, 3)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그 중 원룸형 주택은 위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가.~라.목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으로, 2015년에 이 사건 업무편람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처음으로 언급하기 전까지는 관행적으로 용도가 비슷한 아파트 등의 용도로 오수량을 산정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업무편람(2015. 07) 53쪽에서 ‘원룸형 주택은 기존의 고시에서는 기숙사, 고시원과 같은 산정방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단독주택의 산정방법을 적용할지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욕실, 부엌이 있는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 사건 업무편람(2021. 03) 30쪽에 환경부 고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건축물 용도 분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유사용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건축법과 환경부 고시 비교표에서도 건축법상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 330㎡ 이하, 3층 이하로 분류하고 있으나, 환경부 고시에서는 주거시설 중 하나로 다중주택을 분류하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따로 없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을 단독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환경부 고시에서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 2015년부터 처음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사건 업무편람(2015. 07) 55쪽의 〈적용예-4〉는 다

중주택 등에 개별취사시설이 있을 경우 오수발생량을 ‘단독주택용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적용 예시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 <적용예-4>에서 예로 들고 있는 ‘연면적 800㎡의 다중주택(원룸형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구분 중 다중주택의 세부기준인 ‘연면적 330㎡ 이하’에 부합하지 않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과 환경부의 이 사건 고시에서의 분류는 차이가 있으므로, 위 <적용예-4>의 ‘다중주택(원룸형 주택)’은 신청인2의 신축 건축물인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환경부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였을 때, “질의내용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원룸형 주택’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기숙사, 고시원 등의 용도와 유사한 건축물 용도라면, 오수발생량은 개별취사시설이 있을 경우 ‘단독주택용도’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은 $N=0.038A$ 또는 정원이 명확한 경우 $N=P$ 로 산정할 수 있음”이라고 회신한 바, 신청인2의 신축 건축물의 용도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으로, 기숙사, 고시원 등의 용도보다는,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욕실 및 부엌이 있고 정원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단독주택과 비슷한 용도로써 현장여건과 가깝기에, 이 사건 업무편람(2015. 07, 2021. 03)에서 각각 명시한 바와 같이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에 일괄적으로 ‘단독주택용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업무편람(2021. 03.) 53쪽의 <적용예-4>에서 예로 들고 있는 ‘다중주택(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과 신청인2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 소결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 공제 요청과 관련하여 ① 이중부과금지원칙 및 부담금 기준을 완화된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축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때에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중 부담금을 부과·납부한 상당의 오수량을 공제하는 것이 그에 부합하며, ② 피신청인도 신청인1에 대하여 당초에는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 중 부담금을 기납부한 상당의 오수량을 공제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신청인1이 부담금을 납부하였던 만큼의 오수량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린 후에도 과오납액 및 이자를 합하여 환부하였고, ③ 신청인2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신축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에서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 중 부담금을 부과·납부한 상당의 오수량을 공제하고 신축 건축물에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환부할 과오납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 「하수도법」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례에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 공제와 관련된 내용이 적확하게 표기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신청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신청인2의 신축 건축물 용도에 따른 오수발생량 수정 요청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고시에서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위 기준의 수치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위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비슷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2015년부터 이 사건 고시 [별표]의 주거시설 중에서 면적 기준으로 오수발생량을 산정하던 공동주택용도의 기숙사,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에 개별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인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단독주택 산정방법으로 통일하였으며, ③ 신청인2의 신축 건축물의 2~14층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하나인 원룸형 주택으로 2015년 이 사건 업무편람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처음으로 언급하기 전까지는 관행적으로 용도가 비슷한 아파트 등의 용도로 오수량을 산정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업무편람(2015. 07) 53쪽에서 원룸형 주택에 대하여 기존의 고시에서 기숙사, 고시원과 같은 산정방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단독주택의 산정방법을 적용할지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욕실, 부엌이 있는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④ 이 사건 업무편람(2021. 03) 30쪽에 환경부 고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건축물 용도 분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유사용도를 적용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 330㎡ 이하, 3층 이하로 분류하고 있으나, 환경부 고시에서는 주거시설 중 하나로 다중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며 그에 대한 세부 기준은 따로 없는 바, 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이 사건 업무편람(2015. 07) 55쪽, (2021. 03) 53쪽의 <적용예-4>에서 예로 들고 있는 ‘연면적 800㎡의 다중주택(원룸형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과 환경부의 이 사건 고시에서의 분류는 차이가 있으므로, 위 <적용예-4>의 ‘다중주택(원룸형 주택)’은 신청인2의 신축 건축물인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⑥ 환경부의 질의회신에서 “... ‘원룸형 주택’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기숙사, 고시원 등의 용도와 유사한 건축물 용도라면, 오수발생량은 개별취사시설이 있을 경우 ‘단독주택용도’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은 $N=0.038A$ 또는 정원이 명확한 경우 $N=P$ 로 산정할 수 있음”이라고 회신한 바, 신청인2의 신축 건축물의 용도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으로, 기숙사, 고시원 등의 용도보다는,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욕실 및 부엌이 있고 정원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단독주택과 비슷한 용도로 볼 수 있기에,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에 일괄적으로 ‘단독주택용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⑦ 피신청인이 신청인2에게 신축 건축물 용도를 당초에는 ‘공동주택’으로 보아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업무편람에서 규정한 대로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산정인원을 일괄적으로 ‘단독주택용도’를 적용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과오납액과 이자를 이미 환부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업무편람(2021. 03.) 53쪽의 <적용예-4>에서 예로 들고 있는 ‘다중주택(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과 신청인2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 시민호민관은 사실관계 확인, 관련법령 조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례 검토, 신청인과 피신청인 제출자료, 법률 자문, 환경부 질의회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바, 공정한 행정구현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23.

시민호민관 주요사례



고충민원 결정례

④ 도시·교통분야

4-1

OOOO공원 관련 보상(편입해제 또는 조속보상)요구 - 시정권고



1. 고충민원 개요

가. 신청요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동 ☆☆☆ 전 등 총 7필지 50,887㎡를 도시관리계획결정(2008. 8. 19. 경기도 고시)에 따라 OOOO공원 구역으로 지정하여 임대불편 등 재산권의 행사를 못하게 하고, 1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2018. 8. 20.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자동실효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위 토지 일원을 OOOO공원 구역으로 재지정하고 2021년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계획도 공고하지 않고 있으니, OOOO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해제 하거나 조속보상을 요구함.

나. 당사자

- 신청인 : ○ ○ ○
- 피신청인 : 시흥시장(공원과)

2. 결정

가.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도 시흥시 ○○동 ☆☆☆ 전 등 총 7필지 50,887㎡ 토지에 대하여 조속히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여 보상절차를 이행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나. 이유

- 불임과 같다.

〈불 임〉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신청인은 시흥시 ○○동 ☆☆☆ 전 3,461㎡ 등 총 7필지 50,88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신청인 외 망부(亡夫) ○○○으로부터 2001. 2. 12. 상속으로 취득한 소유자이다.
- 피신청인은 2008. 8. 19. 경기도 고시에 의거 이 사건 토지 일원을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근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여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여 왔고, 구역지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2018. 8. 20. 자동 실효되었으며, 피신청인의 행정지연으로 신청인은 10년동안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임대불편 등 피해를 입었고,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자동실효 되었다.
- 이후,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 일원을 ○○수변공원 구역으로 지정하여 2018. 9. 주민설명회를 하고, 설명회 당시 2018. 11. 주민공람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과 2019. 1. 보상계획공고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2021년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 외에는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아무런 보상계획도 공고하지 않고 있다.
- 신청인은 2019년도에 재산세로 17,549천원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상가 임대를 위해서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최소 10년 이상을 보장해 줘야 하고 토지가 수용되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데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이에, 신청인은 건물 임차라도 가능하도록 공원조성사업에 포함된 신청인 소유 토지 편입을 제척하든지 또는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 ○○수변공원은 2019. 8. 수변공원으로 시설결정 된 후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토지보상비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시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토지보상비를 최대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중이며,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택지 개발이 준공되면서 공원조성에 관한 민원이 많았고, 주민과 합의하에 실현가능한 규모로 공원 계획을 축소하였으나 이후, 시 재정여건 악화로 실무적 검토를 많이 하고 있으며, 농어촌공사 부지 보상비가 확보되면 신청인 토지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 또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공원조성사업에 해당하여 도시계획결정 해제는 수용할 수 없다.

2.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48조, 제48조의2, 제8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7조, 제8조 등

3. 이 사건의 판단

가. 법률관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8조의2(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1항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1항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1항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항 ‘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예상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OO저수지 일원의 공원지정 필요에 따라 2008. 8.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OO근린공원(297,800㎡)으로 결정되었다.
- 이 결정면적 중 93%가 사유지로서 총사업비 2,000억원 중 지장물보상비를 제외한 토지보상비만 약 991억원으로 투자비 과다로 사업추진이 어려웠음이 인정된다.
- 고시일로부터 1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2018. 8. 20.자 경기도보 제6034호에 고시한 ‘시흥시 고시 제2018-115호 도시공원(OO근린공원)결정의 실효고시’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자동실효 되었다.

- 피신청인은 현실적인 대안 사업으로 OO문화공원(26,554㎡)을 계획하였고, 2018. 2. OO근린공원 축소 및 OO문화공원(26,554㎡) 신설을 위한 주민공람, 2018. 5. (1차)사업추진 현황 설명회 및 2018. 9. (2차)사업추진 현황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 및 저수지변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원면적을 59,810㎡로 하는 수변공원을 신설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였다.
- 피신청인은 2018. 11. 7. OO저수지 명품 공원화 계획 수립시 2019년부터 2022년까지를 총 3단계로 계획하고, 1단계(2019년~2020년) OO수변공원 조성(■동 ★★★ 일원)에 총사업비 13,087백만원(용역비 167, 보상비 8,420, 공사비 4,500)으로 계획하였다.
- 신청인은 각각 2020. 9. 23., 2020. 12. 17.자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OO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이후 사업진행 사항에 대한 질의 민원 신청을 통해 소속한 행정절차의 시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비 증가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재정여건이 어려워니 단계적으로 토지보상비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여 토지보상비를 지급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 피신청인이 2021. 2. 22. 공원과-1660호 ‘OO수변공원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시장에게 결재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주요내용은 첫째, ‘토지보상비 지속상승 예상, 22년까지 국비(공사비) 집행 필수, 주민과의 합의된 계획안 신속이행 요구, 토지주 민원제기 및 소송예고’의 문제점에 대하여 ‘금회 추경시 확보되는 예산으로 가능한 부지 최대한 확보, 금년도 확보된 부지에 2022년 공사추진, 토지주 지속 설득 및 사유지 일부 매수, 시 재정을 고려한 단계별 토지매입 및 사업추진’을 대책으로 하고,
둘째, 단계별 토지매입 계획으로 1단계 47억, 2단계 47억, 3단계 52억을 확보하되 1단계 토지보상비 확보시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분할납부 가능 시 가용예산으로 2단계 토지보상비로 지출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산권 침해 처분성

-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그 결정 자체로 인하여 직접 결정이 지정한 특정 지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가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의 권리행사를 제한받게 되는 점에서 볼 때,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헌법재판소 2008. 12. 26. 2007헌마862; 헌법재판소 1998. 4. 30. 97헌마141;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등 참조).
- 더 나아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는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확정하는 처분이고, 이 경우 그 도시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당시의 관련 법령이 정한 보상기준에 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를 지니게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9. 29. 결정 2002헌바84; 헌법재판소 2009. 7. 30. 2007헌바110;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참조).
- 반면 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입장들이 나뉘고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와 같은 보호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존재하는 한편(헌법재판소 2005. 9. 29. 2002헌바84 등, 판례집 17-2, 98, 118 참조),

- 이와 달리,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는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비례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재산권의 내용에 대한 확인적 규정이라고 할 것으로서, 10년의 기간 동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재산권이 제한상태로부터 회복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권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판례집 17-2, 98, 128참조).
-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국토계획법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2011년 해제권고 제도를, 2015년 해제신청 제도를 각 도입하여 시행하는 등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장기간 미집행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의 침해 문제를 보다 완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자동실효 되었음에도 다시금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결정을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한편,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실효되는 조항에 반하는 조치를 통해 신청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라. 호민회의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 호민회의가 2021. 2. 19. 개최되었고, 호민관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집행없이 장기간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도시계획 해제 후 재지정을 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임과, 도시계획결정 전에 보상계획 등 까지 충분히 검토 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예산 확보방안 수립 없이 도시계획결정하는 관행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였다.
- 아울러, 호민관은 피신청인에게 아래 3가지 사안을 살피도록 요구하였다. ① 해당 사업은 ☆☆지역의 타 민원 때문에 수립한 계획이지만, 민원을 이유로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시설해제여부를 살필 것. ② 계속 공원조성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바, 사업에 꼭 필요한 면적이 어디까지인지 재검토 할 것. ③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가 농어촌공사와 신청인 뿐이고, 신청인의 경우 이 일대 소유 토지 전체가 편입되는 바, 사업의 진행 단계별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① 이 사건 토지는 2008년 OO근린공원 구역 지정 이후 2018년 자동실효된 곳으로, OO수변공원은 동서 녹지축(OO저수지~멀티테크노밸리)의 시점에 해당하는 중요한 곳으로 해제는 불가하다.
-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4]의 제2호 주제공원 다.수변공원에 따라, 도시공원 안에서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조성하고자 하

는 공원 전체면적의 100분의 40이하로 정하고 있고, OO수변공원 조성계획에서 시설면적(21,445㎡)이 전체면적(59,810㎡)의 35.9%에 해당하고,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에 포함되는 최소면적(53,613㎡) 이상이어야 하므로 사업 면적 축소는 어렵다.

- OO수변공원(59,810㎡)은 실효된 OO근린공원(297,800㎡)의 약20% 규모의 대체시설로, 2018년 주민설명회 당시 공원규모 축소 시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전제로 시민들과 합의 도출된 사항에 해당하여 면적 축소는 어렵다.
- ③ 농어촌공사와 신청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예산편성, 보상금 지급 등 전반적인 진행 정보가 신청인에게 소상히 공유되도록 하겠다.

마. 도시계획시설의 조속 집행 보상 및 해제

-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의 시행 이후 1997. 12. 31.까지 전국적으로 약 29억㎡의 면적에 대하여 약 23만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었는데, 그 중 계획이 집행되지 아니한 미집행 면적은 약 13억㎡에 달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997년도에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으로 도시계획법 제4조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1999. 10. 21. 97헌바26 판례집 11-2, 383 참조).
- 즉, 사인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당해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변경금지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 1997년도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언젠가 재원이 마련되면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 방식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입법개선 시한인 2002년부터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든지 시설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보상대책을 마련한 후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신청인의 토지는 2008. 8.과, 2019. 8.에 연이는 2차례의 도시계획 결정으로 12년 이상 일체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장기 미집행 상태로 존치되고 있으며, 예산확보를 통한 단계별 집행이 구체화 되기까지는 보상이 요원하다 할 것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 1997년도에 헌법불합치판단을 내린 결정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할 것이다.
- 예산상의 문제로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도시계획 지정을 대폭 해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용지 확보 등 도시의 계획적 개발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신청인 토지의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은 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중대한 공익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이라 할 것이다.
- 현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 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연속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신속한 사업의 집행을 위한 재원이 지금까지 확보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신뢰를 담보로 미래에 있을 막연한 가치를 기대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

라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신뢰에 상당한 일부 매수라도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집행 의지와 신뢰관계를 회복하여야 하는 한편, 조속히 단계별로 보상·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 시민호민관에서는 사실조사, 제도검토, 신청인과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주장과 호민회의 결과 등을 종합한바, 장기미집행중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 방향성을 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13.



4-2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신청(최고서) - 시정권고

1. 고충민원 개요

가. 신청요지

- 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 ◎◎동 ☆☆-☆ 전 1,018㎡, ★★-★ 대 251㎡를 소유했던 자로, 0000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와 일부 지장물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았으나, 영업손실과 수목 등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누락되어 오랜 기간 보상을 요청함.
- 영업손실 및 수목 등 지장물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기 바란다는 고충민원을 제기함.

나. 당사자

- 신청인 : 0000
- 대리인 : 0000
- 피신청인 : 시흥시장(관광과장)

2. 결정

가.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역 개발구역 중 ◇◇지구개발사업(000 이주단지 및 추가 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 (1) 영업손실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5조 및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 4. 12.〉 제3조를 적용하고
 - (2) 수목 등에 대한 지장물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여 적법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정당한 보상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나. 이유

- 불임과 같다.

〈붙임〉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 ◎◎동 ☆☆-☆ 전 1,018㎡, ★★-★ 대 2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했던 자로, 이 사건 토지는 1992. 8. 11. '◆◆◆◆지역 개발구역 중 ◇◇지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000이주단지 및 추가단지조성)에 대한 실시계획승인(건설부고시 제1992-433호)' 시에는 간접피해구역으로, 경기도 ◇◇지구 개발 지원사업소에서 이주대책차원에서 가옥에 대해서만 실태 조사하고, 1992. 8. 11. 기준으로 보상하였다.
- 이 사건 토지가 1997. 4. 12. 이 사건 개발사업(000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7-72호)에 편입 및 수용되어 1998. 4. 8. 원 사업시행자였던 한국수자원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보상을 받았으나,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는 1992. 8. 11.을 기준으로 가옥에 대하여 보상한 것을 이미 보상이 실시되었다고 하며 현장에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조서를 작성하여 영업손실 및 수목 등의 지장물이 누락되었고, 2010. 12. 31.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자가 피신청인으로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적법한 감정평가 및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의 2016. 10. 24. '영업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의견표명과 피신청인이 2017. 6. 26. 신청인에게 '지장물(수목)에 대하여는 철거 전 규격, 수종 및 수량에 대해서 조사 완료하였으며, 영업권 보상에 대하여는 권익위에서 기의결한 대로 보상할 예정'이라고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안내도 없다가 이제 와서 보상할 수 없다고 함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피신청인

- 워낙 오래된 사안으로, 영업손실보상 가능 여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서는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적법한 장소가 아닌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한 것이기에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충분한 근거 자료와 사실 확인이 된다면 보상 의지가 있다.
- 수목 등 지장물은 신청인이 제출한 목록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상대로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 관계법령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2조, 제61조, 제7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 4. 12.〉 제3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3. 이 사건의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개황

-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사업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 1986. 9. 27. 이 사건 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 지정(건설부고시 제424호)
 - 1987. 6. 1. 이 사건 개발사업 계획 변경(건설부고시 제219호)
 - 1989. 9. 30. 이 사건 개발사업 계획 변경(건설부고시 제539호)
 - 1992. 8. 11. 이 사건 개발사업(000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건설부고시 제1992-433호)
 - 1997. 4. 12. 이 사건 개발사업(000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7-72호)
 - 2002. 4. 1. 000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자연공원 포함) 시흥시 000유적 제441호(문화재청고시 2002-15호)
 - 2007. 8. 14. 0000공원 조성협력 협약체결 (한국수자원공사 – 시흥시)
 - 2010. 7. 30. 실시계획 분리변경 승인(000 4차 → 000 4차, 5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10호)
 - 2010. 11. 29. 000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5차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청
 - 2010. 12. 31. 이 사건 개발사업 000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5차 조성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사건 개발사업 000 00공원) 사업시행자 변경(한국수자원공사 → 시흥시) ◇◇1단계 준공관련 협약서

나. 민원경위

-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 중 ◎◎동 ☆☆-☆은 1981. 5. 13부터, ★★-★는 1981. 5. 27.부터 소유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1992. 8. 11. 이 사건 개발사업(000이주단지 및 추가단지조성)에 대한 실시계획승인(건설부고시 제1992-433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보상 요구로 「(舊)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간접보상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일부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보상되었다.
- 이후, 이 사건 토지는 1997. 4. 12. 이 사건 개발사업(000이주단지 및 추가단지조성)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7-72호)에 의하여 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에 편입되었고, 1998. 4. 8. 원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았으나, 영업손실과 수목 등 지장물은 누락되어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 신청인은 1997. 9. 13. 000 00공원 보상심의 위원회에 참석하여 당시 사업시행자였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누락된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며, 피신청인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그 이후로도 권익위의 전신(前身)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에 신청인의 사정과 억울함에 대하여 수차례 호소하였다.
- 피신청인과 2010. 12. 31. 한국수자원공사는 “◇◇1단계 준공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 제2조에 ‘피신청인은 지장물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지장물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한국수자원공사 소유 토지에 있는 지장물 중 000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97. 4. 12.) 이전에 존재한 지장물로서 보상 누락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비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별도 부담’하며, ‘사업시행자가 피신청인으로 변경되면 종전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사업을 승계한 피신청인에 이전된 것으로’ 보기로 하였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되는바, 신청인은 사업시행권을 승계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적법한 보상을 계속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에 대하여 권익위에 영업손실 및 지장물(수목)보상을 신청하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권익위에서는 피신청인이 수목이 존재하므로 조사를 하여 적법한 보상을 하겠다는 의견을 표한 것을 이유로, 2016. 10. 24.자 의결서에는 “영업손실에 대해서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는 결정만 받았다.
- 위 결정 이후, 피신청인은 2017. 6. 26. 신청인에게 ‘지장물(수목)에 대하여는 철거 전 규격, 수종 및 수량에 대해서 조사 완료하였으며, 영업권 보상에 대하여는 권익위에서 기의결한 대로 보상할 예정임’이라고 공문을 송부하였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2020. 12.경 권익위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권익위에서는 피신청인이 2016. 12. 7. ‘2017년 상반기까지 신청인과 협의하여 영업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고충민원처리계획서를 권익위에 제출하였던 사실을 알려주었다.

다. 호민회의

- 호민관은 2021. 1. 8.과 7. 1. 두 차례에 걸쳐, 사유 재산에 대하여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억울해하던 신청인의 목소리를 듣고, 피신청인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인 호민회의를 개최하였다.
- 호민관은,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현행법상의 부칙에 따라 다시 감정평가 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오랫동안 보상이 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수목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수목 목록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상대로 감정평가 진행해야 할 것이며, 피신청인이 권익위와 신청인에게 ‘권익위의 의결대로 보상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시행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행정기관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적법하고 조속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라. 영업손실보상

- 피신청인은 감정평가법인 2곳의 ① 신청인의 영업을 이 사건 사업고시일 전부터 행한 영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② 신청인의 영업장소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 따른 적법한 장소가 아닌,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근거로 하여 계속해서 보상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 권익위의 2016. 10. 24.자 의결서 3쪽 및 4쪽에서는 신청인이 대표자였고 사업장 소재지가 이 사건 토지 중 ★★-★인, ① 시흥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에 따라 ‘■■기업사’의 1992. 10. 1.부터 1996. 6. 30.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기간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과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② 시흥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시스템’의 개업일은 1982. 10. 25, 폐업일은 2007. 12. 31.로 확인되며, 1996. 10. 1.부터 2000. 6. 30.까지 기간 중 각 과세기간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과 납부세액이 확인된다.
- ★★-★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위 ■■기업사와 ◆◆◆◆시스템 두 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시흥세무서장이 2016. 8. 10. 발급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1996. 7. 1. 관할구역변경으로 ■■기업사(▲▲▲-▲▲-▲▲▲▲)에서 ◆◆◆◆시스템(△△△-△△-△△△△△)으로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으며 직권 구등등록폐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시흥세무서 개인납세2과 담당조사가 2016. 8. 22. 권익위에 제출한 추가설명 내용에 의하면, ‘1996. 7. 1. 관할변경으로 인한 ■■기업사의 사업자등록 직권 구등등록 폐기, 2002. 8. 30. ◆◆◆◆시스템으로 상호 변경 및 부업종 1개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 「(舊)토지수용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는 ‘... 영업상의 손실, 기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받은 손실, ...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舊)토지수용법」은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토지보상법」이 제정 및 2003.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 사업인정 고시일인 1997. 4. 12. 당시의 「(舊)토지수용법」 제51조에서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받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영업을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점과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의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영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은 2007. 4. 12.에 개정 및 시행된 규정으로, 개정 전에는 일정한 장소이기만 하면 되었고, 같은 시행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 4. 12.〉 제3조에 따라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바, 그에 따라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시흥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및 사실증명에 의하면, 신청인은 ■■기업사를 1997. 4. 12.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고, ◆◆◆◆시스템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계속적인 영업을 통하여 매출이 발생하였고 세금도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신청인이 영업 소재지인 경기도 시흥시 ◎◎동 ★★-★☆에 주소를 두고 계속적으로 거주하였고, 원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998. 8. 작성한 영업보상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영업과 관련된 공장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마. 지장물(수목)보상

- 신청인은 2017. 9. 16, 2017. 10. 12. 본인 외 지인 2명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감나무, 왕벚나무, 매화나무 등 각 수목에 비닐로 번호를 붙이고 증거사진을 촬영하여 수목의 종류와 개수, 직경, 높이 폭 등을 기재하여 그 목록을 제출한 바 있다.
- 신청인이 1996. 12. 5. 수령한 지장물보상금사정내역(건물)에 지장물 지급조서상 건물, 창고, 화장실, 철대문, 울타리에 대하여만 13,049,100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목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한 근거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자연림인지 신청인이 식재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무조건적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피신청인이 2017. 6. 26. 신청인에게 보낸 공문 내용과도 상치(相馳)된다.
- 호민관실에서는 2021. 6. 23.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 현 상태를 육안으로는 수목의 규격, 수종 및 수량 등에 대하여 식별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 오랜 기간 보상이 늦어지면서 지장물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신청인의 일부 수목들이 훼손되거나 신청인이 사용하던 수목 관리시설 및 도구 등 멸실된 부분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수목 목록 및 사진 등을 최대한 참조하여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소결

- 피신청인은 2010. 12. 31.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화1단계 준공관련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을 승계한 사업시행자로서, ①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정당보상원칙에 의하여, ② 영업손실보상은 신청인이 1997. 4. 12.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서 영업을 영위함을 증명한 것과 ③ 2007. 4. 12. 개정 전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 따르면 일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면 되었고,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 4. 12.〉에 따라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④ 권익위에서 2016. 10. 24.자 의결서에는 “영업손실에 대해서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는 결정과 ⑤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2017. 6. 26. 신청인에게 ‘영업권 보상에 대하여는 권익위에서 기의결한 대로 보상할 예정’이라고 공적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제야 그에 상충되는 거부 의견을 표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⑥ 신청인이 2017. 9. 16, 2017. 10. 12. 이 사건 토지의 수목을 일일이 조사하고 사진을 찍어 목록을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2017년 신청인에게 ‘지장물(수목)에 대해서는 철거 전 규격, 수종 및 수량에 대해서 조사 완료 및 보상 예정’이라는 공문으로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에 대하여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며, ⑦ 신청인이 약 30년이란 오랜 기간을 본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 및 침해당한 부당함에 대하여 여러 기관에 문을 두드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피신청인의 보상 예정을 신뢰하며 기다렸으나 돌아온 것은 정당한 이유의 고지나 성실한 조사, 적법한 감정평가 없이 거부된 것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영업손실 및 수목 등의 지장물 보상을 위한 적법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정당한 보상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 시민호민관은 사실관계 및 현장 확인, 관련법령 조사, 호민회의 진행, 신청인과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주장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바, 공정한 행정구현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20.

4-3

○○동 택지개발 이주대책 수립 요구 및 진행상황 정보공유 요청 - 조정



1. 고충민원 개요

- 신청인은 2017년 주거와 사업을 하고자 토지와 주택을 취득하여 2018년 11월 1일부터 2020. 9월 현재 거주하고 있었으나, 본 토지가 ○○지구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되면서 수용될 시 재산상 피해가 크므로 택지지구 지정 제외를 요구하며 불가피한 지정 시 대체부지를 요청 및 이주대책을 수립 요청함
- 또한 이사건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요청

2. 처리결과

- 시민호민관에서는 신청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지구 개발사업 경과, 관련 법령과 자료 검토, 부서 의견 청취, 2020년 10월 7일 현장조사를 통해 주거 및 토지이용 실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 2020년 11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보상협의회 당시 설명 자료 송부 등 공동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진행사항을 계속 공유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 또한, 부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견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시흥00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의 기준일은 2018년 9월 21일(지구지정 주민공람 공고)입니다.
 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민원인은 2017년 9월 2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년 9월 2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습니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기준일 이전부터 허가 가옥을 소유하고 기준일 1년 전(2017년 9월 21일)부터 사업지구 내 계속 거주한 자에 한하여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원인의 경우 이 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주대책수립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시흥00 공공주택지구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심사 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취득 보상 이후입니다.
 마. 따라서, 시흥시는 민원인의 경우 공공이축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 취락지구에 이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1. 4. 9.

4-4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처분취소 및 원상복구 - 조정



1. 고충민원 개요

- 신청인 (주)○○은 ○○○동 및 ■■■동, ◎동 일대에 폐염전을 소유한 자로서 ○○○동 ☆☆☆-☆☆☆번지 등에 불법 형질변경(성토),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행위로 인해 2021. 6월 경 피신청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제30조,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받음
- 이에 신청인은 사건 토지는 폐염전 상태에서 오랫동안 자연 상태로 놓여있었고 과거 항공사진 등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불법행위는 위치별로 조금씩 달라 일부는 2009년 이전에 이루어졌고 일부는 2010년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신청인이 행위시점에 따라 그 행위당시의 법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시점인 현재 법에 따라 행위자가 아닌, 소유자인 성담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 개특법 개정 시행(2010.2.6)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자 :
개정이전 -행위자 / 개정이후 -행위자 및 소유자
- 특히 ○○○동 ☆☆☆-☆☆☆번지 토지에 대해 피신청인이 그동안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신청인이 여러 차례 구체적인 성토위치나 면적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문의하였음에도 안내가 없었고 처분 근거를 제시 받지 못해 부당하다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취소(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고충민원을 제기함

2. 처리결과

- 2021년 10월 19일 호민회의 결과에 따라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2021년 8월 5일 접수한 고충민원 조사결과 조정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정 결정사항

가. 신청인 : (주)OO

나. 피신청인 : 시흥시장(건축과장)

- 시민호민관은 호민회의를 통하여,
- 신청인은 2021년 6월 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등에 불법형질변경(성토행위), 물건 적치 등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받고 다음과 같이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요청하였음.
 1. 불법성토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해 사토장으로 신청인 소유의 ◎동 ★★-★번지 토사적치 허가
 2. 사토장 확보 및 토사반출 준비를 위한 원상복구기간을 2022년 9월까지 연장
 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철회
- 이에 피신청인은 위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음.

요청사항 1.에 대하여, ◎동 ★★-★번지의 법정지목은 '유지(溜池)'이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 3. 아.목에서 물건의 적치는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으므로, 현재 위 토지의 형상이 잡종지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정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지 않는 한 토사 적치는 불가함.

요청사항 2.에 대하여, 신청인의 원상복구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복구 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하겠음.

요청사항 3.에 대하여, 현재 불법형질변경이 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등 시정되지 않은 바, 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철회는 불가함.
- 시민호민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원상복구가 궁극적 목적이므로 신청인은 적극적으로 원상복구 해야 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철회는 불가하며, 피신청인도 신청인이 원상복구 의지가 있는 점과 사건 토지의 면적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원상복구를 위한 사토장 확보 및 토사반출에 협조하고, 불법영농 행위를 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영농시설 철거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에 합의하였기에 조정 결정함.

2021. 11. 4.



시민호민관 주요사례



고충민원 결정례

⑤ 농정분야

5-1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취소 - 조정



1. 고충민원 개요

- ◎◎동 ☆☆☆-☆ 필지는 시흥~서울 연결도로 사업 신천C 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될 예정으로, 농지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고, 대부분이 도로 완충녹지이며 6차선 간선도로를 지지해주고 있는 옹벽·축대(8미터 높이) 역할을 하고 있어 농지로 사용될 수 없는 곳임.
- 토지매수자가 없음에도 원상복구나 매각처분을 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농지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요청함.

2. 처리결과

- 시민호민관에서는 처분경위, 관련법령 검토, 2021년 3월 26일 관련부서(농업정책과, 도로시설과)와 【2021년 제7차 호민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가. 신청인은 2003년 1월 17일 매입당시에는 토지가 아스팔트가 아닌 흙 상태였고, 토지거래허가 입법목적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증여계약서대로 등기이전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나. 농업정책과에서는 해당 필지는 농지법상 농지이고 「농지법」에는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업경영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원상회복명령이나 처분명령을 할 수 있고, 신청인들이 증여계약서를 2021년 3월 23일 최근 제출하였는바, 세대원이 아닌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면 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는 것이 되어 이 사건은 종결된다고 답하였습니다.

다. 도로시설과에서는 「시흥~서울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신천C 시설지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후 벽면부분은 사면으로 편입을 시키든지, 편입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은 옹벽을 쌓겠다고 하였습니다.

- 다행스럽게도, 신청인이 증여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법적이건이 충족되면 처분명령이행 종결토록 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정 결정사항

- ① 피신청인(농업정책과장)은 접수된 증여계약서를 살피 법정이건이 적합할 시 이 사건 처분명령을 종료한다.
- ② 피신청인(도로시설과장)은 「시흥~서울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신천C 시설 지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확정된 것이므로 신청인 토지의 편입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편입 시에는 보상하는 한편 미편입시에는 안전대책 수립을 한다.

2021. 4. 7.





부 록

1. 보도자료	90
2. 연혁	96
3. 역대 시민호민관 약력	98
4.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100
5.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07

NEWS

보도자료

하상선 기자 / 승인 2021.02.26 16:16

#01

시흥시 시민호민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시흥시 시민호민관이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에 수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시흥시)

시흥시 시민호민관이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에 수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이 날 시상식에서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민원·옴부즈만 분야 단체부문에서 수상하며, 실질적인 고충민원 해소와 시민권익 구제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1대 임유, 제2대 유상진, 제3·4대 지영림 호민관으로 이어져 온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지난 2013년 3월 국내 유일의 상근독임제 지방옴부즈만으로 출발했다.

지난 8년간 독립성 및 법률과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시민호민관이 위법·부당한 행

정에 대해 직접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결정하는 책임성을 특징으로 운영하며 심도 있는 고충처리 및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시민자문단을 구성·운영하며 호민관 직무수행의 공평성을 확보했으며, 2017년부터는 호민회의를 도입했다.

호민관 주재로 민원인과 관계부서 책임자, 이해관계인 등이 함께 모여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금까지 63회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필수화 해 총 149회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권익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시민호민관 제도 도입 이후 고충민원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의 긍정적 변화를 통해 의견표명이나 시정권고에 이르기 전, 호민회의 또는 부서 협의 중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호민관의 조정·중재 또는 의견표명·시정권고가 받아들여지는 시흥시 수용률은 98%를 넘어서며, 시민호민관 제도는 시흥시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월 8일에는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여전히 감사 때문에 시민호민관의 결정을 주저하는 공무원들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감사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조례에 명시하며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범사례로서, 타 지방자치단체 지방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및 평가를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및 세계(아시아)옴부즈만협의회 등 국내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과 전국적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옴부즈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영림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시행정기관을 통한 불복절차를 모두 다 거치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마지막으로 시민호민관실에 찾아오시는 시민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지난 4년간 단 한 명의 억울한 목소리도 허투루 넘길 수 없었다”며, “시민호민관 제도가 시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나아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시민 여러분의 곁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소통·권익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하고, 국민 고충 해결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등 국민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을 선정해 매년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출처 : 경인매일(<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806>)

NEWS

보도자료

(시흥)강대웅 위준휘 기자 / 입력 2021-03-04 10:41

#02

‘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보는’ 시민호민관, ‘2020 운영상황보고서’ 발간



고충민원 처리 절차, 호민회의 운영현황 등 시민호민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운영상황보고서' 표지.[사진=경기 시흥시 제공]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2020년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시흥시의회에 운영상황의 주요내용을 보고했다.

‘시민호민관’은 지난 2013년 시민들의 요구와 고충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민원상담, 갈등해소, 제도개선, 권익구제 등 고충민원 처리에 앞장서고 있다.

호민관의 조정·중재 또는 의견표명·시정권고가 받아들여지는 시흥시 집행부의 수용률은 98%를 넘어서고 있다. 호민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기능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는 행정쟁송절차를 거치는 대신 간편한 권익구제로 실효성 있게 민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시민호민관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모범사례로 손꼽혀 광명시, 인천 연수구, 대전 대덕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벤치마킹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옴부즈만협의회 가입 승인 및 청렴 옴부즈만, 시민감사관 활동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과 전국적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옴부즈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출처 : 아주경제(<https://www.ajunews.com/view/20210304095637484>)

NEWS

보도자료

이정규 기자 / 입력 2021.06.15 16:34

#03

시흥시, 제5대 백종은 시민호민관 위촉



임병택 시흥시장은 15일 신임 백종은 (전)구로구청 감사담당관을 '시흥시 시민호민관(사진 왼쪽)'으로 위촉했다. (제공 =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는 15일 제5대 시민호민관으로 백종은(62) 전(前) 구로구청 감사담당관을 위촉했다.

시흥시는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시민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백종은 시민호민관은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돼 동작구청, 구로구청에서 37년간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근무했다.

2015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구로구 도시발전기획단장, 건설교통국장을 역임했으며, 그 간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로구 감사담당관(개방형사무관)으로 4년간 근무한 바 있다.

구로구 옴부즈맨 제도 운영 중 청렴계약 감시평가 제도를 시행해 청렴도 향상에 일조했고,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인권의

식 개선과 함양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기도 했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위촉직 신분, 상근 독입제 형태로 근무한다.

시행정과 시민 사이의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을 해소해 가면서 직접 발로 뛰며 시민의 권익구제, 갈등해소,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4년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백종은 시민호민관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사무실에서 서류검토만 하기 보다는 발로 뛰며, 나 또한 시흥시민으로서 시흥의 구석구석을 누비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 관련 부서와 시민 간 견해를 좁힐 수 있도록 만남의 자리도 자주 마련하고 민원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중재 하겠다”면서 “시민이 행정기관에 불만이 있을 경우 기댈 수 있는 마지막이 시민호민관이라 생각하고 시민이 더 쉽게, 더 편하게, 더 친근하게 호민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권익구제를 위해 오랜 기간 속고를 거쳐 도입해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한 호민관 제도가 행정기관과 시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5391>)

NEWS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이영경 / 등록일 : 2021-12-22

#04

시흥시, 권익위와 ‘달리는 국민신문고’ 열어 시민고충 해결 나서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지난 16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이동신문고)’를 열어 시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에 힘을 쏟았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분야별로 구성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중심 민원 해결 상담제도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협업기관인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6개 기관 등 15명의 조사관이 방문해 행정과 교통, 복지, 생활법률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총 24건의 고충 민원이 접수됐으며 특히, 시흥시의 지역여건상 산업·농림·환경 상담분야가 25%로 제일 많았고, 생활법률분야가 21%, 교통·도로분야가 12.5%로 뒤를 이었다. 또한, 상담 받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고객 만족도 설문 결과 90%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한 시민도 있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협력회의」가 함께 개최돼 인근 지역 부천·안산·광명시의 대표 읍무즈만 위원들이 시흥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참관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처리하는 이동신문고를 시흥시에서 개최하게 돼 기쁘다”고 운을 떼고, “벤치마킹 대표 사례로 손꼽히는 우리 시 호민관(읍무즈만) 제도가 타시의 귀감이 되고 있는데, 그 역할과 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며 읍무즈만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당부했다.

출처 : 시흥시 미디어시흥(<https://www.siheung.go.kr/media/bbs/view.do?bIdx=137152&ptIdx=82&mId=0100000000>)

· 시민호민관실 연혁

2012	10.05.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01.25. 민선7기 시민호민관의 역할과 과제 발표 03.04. 아동친화도시 조성 민관협의체 간담회 참석(아동 옴부즈퍼슨) 03.19. 시민호민관 고충민원 사례집(좌충우돌 행정극복기) 발간 04.02. 2018년 운영상황보고서 시의회 보고 05.02. 제3대 지영림 시민호민관 연임 07.14. 시민호민관 시민자문단 신규 및 재위촉 08.12.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부패방지권익위법 근거법령 마련 등) 08.26.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학술토론회 주제발표(지방옴부즈만 현안·확산 방안) 10.22. 지자체 고충민원 분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12.12.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평가 12.18. 지방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방문 컨설팅(6개 기관)
2013	01.09.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03.08. 제1대 임유 시민호민관 위촉 04.03. 시민호민관 사무실 개소 04.25. 시민자문단 위촉(1차)	2020	01.14.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AOA) 가입 신청 승인 03.17. 2019년 운영상황보고서 발간 04.01. 2019년 운영상황보고서 시의회 보고 04.20. 시민호민관 전문조사관 채용 07.10. 개발제한구역 관련 논의를 위한 자문단회의 및 확대호민회의 개최 08.08. 시민무료법률상담관 임기만료에 따른 위촉(신규위촉 3명, 재위촉 13명) 09.24. 지자체 고충민원 분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10.15. 공공서비스 혁신평가 자문 11.24.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심사 12.14. 시민호민관 시민자문단 신규 및 재위촉(신규위촉 3명, 재위촉 5명) 11~12.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적극행정 감사면책규정 반영)
2014	04.01. 2013년 운영상황 보고서 시의회 보고 04.23. “발로 뛰고 귀로 듣는 시민호민관실” 운영(~2014.09.03.) 05.08.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호민관의 의회출석 규정 마련) 08.08. 시민무료법률상담관 위촉(변호사 7명, 법무사 7명)	2021	02.08.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적극행정 면책조항 신설) 02.10. 2020년 운영상황보고서 발간 02.26.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05.12. 시민호민관 고충민원사례집 영문번역본 발간 06.14. 제5대 백종은 시민호민관 위촉 06.28. 시민호민관 운영매뉴얼 발간 07.14. 시민호민관 시민자문단 위촉 및 해촉 10.07. 시민호민관 시민자문단 (비대면)회의 개최 12.16.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달리는 국민신문고 개최
2015	03.04. 2014년 운영상황보고서 발간 03.09. 제2대 유상진 시민호민관 위촉 03.31. 2014년 운영상황보고서 시 집행부 및 시의회 보고		
2016	02.26. 2016년 국민권익의 날 유공자 포상(국무총리 표창) 04.28. “발로 뛰고 귀로 듣는 시민호민관”운영(~2016.09.28.) 10.31. 배심법정 운영 11.14.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 참석(태국) 11.14. 세계옴부즈만협회(IOI) 회원가입 결정		
2017	03.31. 2016년 운영상황보고서 시 집행부 및 시의회 보고 05.02. 제3대 지영림 시민호민관 위촉 05.16. 제15차 AOA 총회 및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참석 07.14. 시민호민관 시민자문단 신규위촉(12명) 12.28. 좋은정책 페스티벌 모범정책상 수상		
2018	05.14. 시흥시 시민호민관 도입 5주년 기념 집담회 개최 07.17. 지영림 시민호민관 규제개혁 유공 국민포장 수상 08.08. 시민무료법률상담관 임기만료에 따른 위촉(신규위촉1, 재위촉 12) 12.20. 시민자문단 신규 위원 위촉		

• 역대 시민호민관 약력



1대

임 유

재직기간

2013. 3. 8. ~ 2015. 3. 7.

주요경력

- 1990. 2.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02. 9. ~ 2004. 9.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홍보 및 제도개선)
- 2004. 12. ~ 2007. 12.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
- 2010. 11. ~ 2011. 12. 미주헤럴드경제 대표
- 그외
한일리스금융 근무(1990~2000)
전국리스노조협의회 의장(1995~1997)
(주)이텍스트코리아 대표(2001~2002)
USC 객원연구원(2008~2009)
글든브릿지증권 미주법인장(2009~2010)
(주)케이알이앤씨 대표(2012~2013.2)



3-4대

지영림

재직기간

2017. 5. 2. ~ 2021. 5. 1

주요경력

- 1986. 2.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9. 8.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1995. 2.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1994. 6. ~ 2011. 9. 국민권익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
- 2011. 9. ~ 2016. 9.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 2015. 3. ~ 2017. 2.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2017. 9.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그 외
국민권익위원장 표창(2021. 2.)
경기도청 옴부즈만(2021. 5.)



2대

유상진

재직기간

2015. 3. 9. ~ 2017. 3. 8.

주요경력

- 1992. 3. ~ 1997. 2.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1997. 2. ~ 2001. 6. 한국개발연구원(주임연구원)
- 2012. 3. ~ 2014. 1. 사법연수원
- 2014. 7. ~ 2015. 3. 경기도청 행정심판위원회 전문요원
- 2016. 3.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대

백종은

재직기간

2021. 6. 14. ~ 현재

주요경력

- 1984. 1. 서울특별시 9급 공무원 임용
- 1988. 2.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12. 1. ~ 2015.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과장
- 2015. 7. ~ 2016. 6.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발전기획단장
- 2016. 7. ~ 2017.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건설국장
- 2017. 6. 서울특별시 명예퇴직(지방부이사관)
- 2017. 7. ~ 2021.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사실장(개방형사무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2. 8.]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995호, 2021. 2.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시흥시 시민호민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는 참여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8. 12, 2021. 2. 8〉

1. “민원인”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민원 중 시민호민관이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5. “시민편의 지원사무”란 시민에게 행정·법률·세무 등 각종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 등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지원하는 사무를 말한다.
6. “시민호민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제32조 및 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이며 대표 읍무즈만을 말한다.

제2장 시민호민관〈개정 2019. 8. 12〉

제3조(시민호민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참여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호민관(이하 “호민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② 호민관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③ 호민관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흥시호민관선정위원회가 선정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호민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시민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운영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위원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흥시호민관선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호민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흥시 호민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호민관의 선정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이 경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혹은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 2. 12,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대표 각 1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호민관업무 담당부서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직무의 독립성) 호민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시는 호민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보수 등) ① 호민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19. 8. 12〉

② 호민관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고,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4호 임기제공무원 연봉 하한액 및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다.〈개정 2019. 8. 12〉

제7조(직무와 권한) ① 호민관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2. 8〉

1. 시민이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권익침해 사안의 채택·조사

3.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4. 부패 및 불공정 유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6. 호민관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7.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과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8. 자문단 운영 및 정책사항 총괄
 9. 민원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0. 시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시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12. 권익구제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3.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4. 권익구제 활동과 관련된 자문·교육·평가
 15.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6. 그 밖에 권익구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민관의 직무와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호민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4. 호민관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수사 및 감사 중이거나 이에 따라 종결 처분된 사항
 6.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7.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8.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9.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접수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10. 국가사무 및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11.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1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13. 호민관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률상 특수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14. 호민관 본인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되는 사항
- ③ 호민관은 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조사·처리 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직무 관할) 호민관이 제7조의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시 소속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9조(해촉) 시장은 호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본인이 사임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제11조의 겸직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5. 제10조의 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0조(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호민관은 시민의 권익 보호자로서 공평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호민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해촉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겸직 등의 금지) ① 호민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정당 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호민관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시민은 호민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고충민원의 신청절차)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호민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과 그 밖의 단체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고충민원의 신청목적 및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원인 또는 사실이 있었던 일시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고충민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등) ① 호민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가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4. 거짓이거나 고충민원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③ 호민관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제15조(시의에의 통보) ① 호민관은 접수된 고충민원 또는 권익침해 사안(이하 “고충사항”이라 한다)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8〉

② 호민관은 고충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 또는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조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합의의 권고 및 조정) ① 호민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호민관은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합의의 권고 및 조정에 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8. 12〕

제17조(권고 또는 의견표명) 호민관은 고충사항의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에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 할 수 있다.〔중전 제16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18조(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존중) 시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중전 제17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18조의2(적극행정 면책)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따라 조치한 경우와 이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시민호민관의 조정·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시흥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 감사 시에 면책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2. 8〕

제19조(조치결과 등 요구) ① 호민관은 제17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시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시는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호민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중전 제18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20조(고충민원 조치결과 통지) 호민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에서 통보받은 고충민원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중전 제19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21조(공표) ① 호민관은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제20조에 따른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② 호민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중전 제20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4장 호민관에 대한 협조·지원

제22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호민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 8. 12〉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공무원)을 두며, 호민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한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9. 8. 1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중전 제21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23조(인력·예산지원) 시장은 호민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중전 제22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24조(운영상황의 보고 등) ① 호민관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호민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호민관은 호민관에 관한 사무와 예산지원 등에 있어 시의회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호민관의 직무와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4. 5. 8〕〔중전 제23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25조(포상) 시장은 시의 발전에 기여한 호민관 및 자문단의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중전 제24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5장 삭제〈2019. 8. 12〉

제26조(적용규정) 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상이하게 된 경우에는 본 조례의 각 규정의 내용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시행일부터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21. 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8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2 조례 제1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용된 호민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2. 8 조례 제1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8. 12.] [경기도시흥시규칙 제901호, 2019. 8. 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제2장 시민호민관

제2조 삭제〈2019. 8. 12〉

제3조(위촉장 교부) 시장은 시민호민관(이하 “호민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① 호민관은 직무와 관련하여「형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 호민관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제5조(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시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시민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시민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혹은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단장은 호민관이 된다.

③ 위원은 행정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호민관이 위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⑤ 자문단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다.〈신설 2019. 8. 12〉

제7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능으로 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자문

2. 운영상황보고서(안) 검토
3. 그 밖에 호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 등

제8조(소자문단) ① 호민관은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호민관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① 단장은 제6조와 제8조에 따른 자문단 등에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서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0조(고충민원신청서 등)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따르며 호민관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사항처리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처리 관련 기록물의 관리 및 보관은 「시흥시 기록관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호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된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 전부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호민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8. 12〉

제12조(정당한 사유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제3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
2.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
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인정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

어야 한다.

제13조(신청서의 보완) ① 호민관은 고충민원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민관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호민관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제14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호민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신청인의 의무)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호민관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할 경우 고충민원의 신청인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진술하고 적절한 증거를 제시 할 협력의무를 갖는다.

② 고충민원 신청인이 제1항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호민관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만큼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제17조(고충민원조사 제외 등 통지)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제외통지서를, 고충민원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지연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제18조(반복·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① 호민관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호민관은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실시의 통보)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충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해당부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신분증의 휴대 등) ① 호민관이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발급대장을 비치·등재하여야 하며, 호민관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고충민원조사결과의 통보)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조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호민관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8. 12〉

- ② 호민관은 조례 제16조제2항의 조정을 위하여 호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제23조(권고, 의견표명) 조례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권고·의견표명)서에 따른다.〈개정 2019. 8. 12〉

제24조(권고, 의견표명의 재심의) 시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호민관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이 경우 호민관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제25조(시정 등 조치의 통보)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권고(의견표명)조치(검토)결과통보서에 따른다.〈개정 2019. 8. 12〉

- ② 호민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결과 조치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한다.

제26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① 호민관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되는 시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호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 및 소속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권고, 의견표명 등의 공표) 조례 제21조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의 공표는 공고에 따른다.〈개정 2019. 8. 12〉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자문단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운영상황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호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2 규칙 제9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자문단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시민자문단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장 호민관에 대한 협조·지원

제28조(사무기구 운영 등)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8. 12〉

1.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 및 인원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2. 사무기구 직원은 호민관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29조(전문조사원 채용 등) 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전문조사원은 3명 이내로 하되 호민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보고 또는 해당분야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조사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개정 2019. 8. 12〉

- ② 전문조사원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개정 2019. 8. 12〉

제30조(공인의 사용) ① 호민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위촉장, 통보서 등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호민관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시흥시 공인 조례」 및 「시흥시 공인 조례

2021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서

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봅니다

발 행 일 2022년 2월
발 행 처 시흥시 시민호민관
편 집 위 원 시민호민관
주 소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시흥시청 본관 1층 시민호민관실
전 화 031-310-2046~9
팩 스 031-380-5303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hominkwan/>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